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3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일시: 2023. 12. 13. (수) 14:00

장소: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

 **YouTube 생중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채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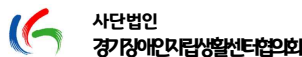
경기북부장래인권익용호기관  
**2023 경기북부장래인권포럼**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일 시 : 2023. 12. 13. (수) 14:00

장 소 : 경기도북부장래인복지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

 **YouTube 생중계**  
(경기북부장래인권익용호기관 채널)





# 2023년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

---

## 인사말

박현희 관장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
------------------------------	---

## 축사

정기열 회장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3
박정식 관장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5

## 발제

경기도형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거주지원체계 구축 - 박현희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9
---	---

## 토론

피해장애인쉼터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 이주목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원장) .....	33
학대피해장애인의 주거지원 방안 마련 - 김병태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	37
학대피해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고려사항 -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센터장) .....	41
사회적 지원주택의 의미, 학대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 유호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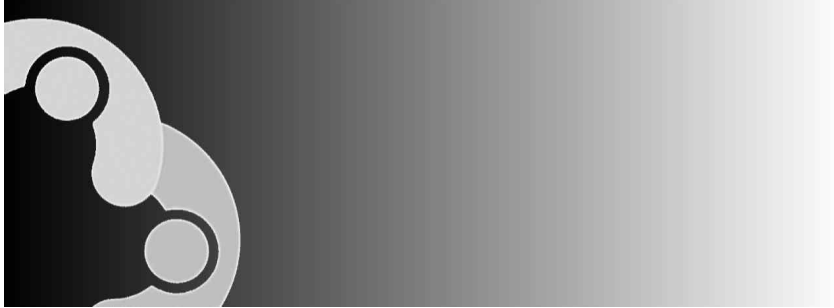
## 활동보고


2023년 경기북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이행사항 모니터링 보고 .....	47
2023년 상담 현황 보고서 .....	75

---

# 일 정 표

시 간		내 용
부터	까지	
13:30	14:00	○ 등록 및 접수
14:00	14:20	○ 개회식 ○ 내빈소개 ○ 인사말
<b>1부.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b>		
14:20	14:40	○ 발제. 경기도형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주거지원체계 구축 - 박현희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14:40	16:00	○ 좌장. 양희택 (협성대학교 교수)  ○ 토론1. 피해장애인쉼터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이주목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원장) ○ 토론2. 학대피해장애인의 주거지원 방안 마련 - 김병태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 토론3. 학대피해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고려사항 -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센터장) ○ 토론4. 사회적 지원주택의 의미, 학대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 유호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의원) ○ 토론5. 경기도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의원)
16:00	16:10	○ 휴식시간
<b>2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활동보고</b>		
16:10	16:30	○ 보고1. 2023년 경기북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보고 - 발표자 : 백주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정책팀장)  ○ 보고2. 2023년 상담 현황 보고서 - 발표자 : 김홍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리옹호팀)
16:30	-	○ 폐회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3 경기북부장래인인권포럼

**인사말 / 축사**





##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박현희입니다.

2023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포럼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인권포럼의 주제는 학대피해장애인의 주거지원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주거의 문제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어려운 일입니다만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그중에서도 학대로 인한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대피해장애인에게 주거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원에 있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지점은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경기도형 학대피해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토론을 준비 하였습니다

함께 고민해주시고 더 나은 경기도의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방안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저희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올해 이사를 하였습니다. 6월말에 의정부에서 양주,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입주를 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 사무실은 상업지구에 있어 편리한점도 많았지만 기관의 특성상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저희 기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중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공건물에 오시도록 하니 그분들도 조심스러워하시고 저희도 조금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기관운영에 늘 애써주시는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김영희과장님 그리고 저희기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위원장과 박재용의원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희기관에 대한 애정과 관심 가져주시고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년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업무는 저희의 힘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쉽터를 비롯한 지역의 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 많은 장애인지원기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해장애인분들이 저희를 만나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지원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늘 남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믿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가기 노력하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또 힘내서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년동안 함께 일해온 저희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장에서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 입술을 앙다물고, 떨리지 않는 척 주먹 꼭 쥐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기에 열심히 피해자를 위해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사랑합니다.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인연을 맺으신 모든 분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박현희



## 장애인 탈시설 권리와 주거 지원

정 기 열 ( 사)경기장애일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안녕하세요 2023년 경기북부장래인인권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2022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발생 이전과 이후 장애인의 권리와 삶, 그들이 시설에서 경험하는 화학적, 기계적, 물리적 제재를 포함한 폭력, 방임, 학대 및 고문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강조하고 만연한 시설수용을 폭로하는 장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은 장애인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따른 의무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장애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의 시설에 수용되고 있다」며 장애인의 시설수용 정책은 차별적인 관행이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제5조 위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접근 가능한 주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에게 공공 주택이나 주거 보조금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저렴한 주택을 보장해야 한다」 또, 「주거는 정신 보건 체계 내에 있거나 시설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는 기관이 관리하는 곳이어서는 안 되며, 의료 또는 특정 지원 서비스 수용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며 탈시설 장애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임대 또는 소유권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초반 탈시설 운동을 통해 많은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살아가고 있지만, 자립생활에 실패해 다시 시설로 들어가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한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주택을 구하지 못하거나 지역사회 서비스 부족으로 다시 시설을 선택하셨습니다. 또는 지역사회 독고 장애인으로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권리와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명시한 정책으로 탈시설 이후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시범사업 중입니다.

이렇게 주거와 자립지원 서비스가 결합 된 정책이 서울시 지원주택입니다. 탈시설 장애인과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택과 함께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와 독립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거 모델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장애인 인구나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학대피해장애인 사건도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수가 많지만 학대피해장애인을 긴급 분리할 공간은 장애인 쉼터 두 곳뿐입니다. 장소가 부족해 고시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장애인을 든든하게 지원하는게 공공의 책임이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경기도에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탈시설 정책과 탈시설 자립지원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지원 주택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그 지원주택에 학대피해 장애인도 함께 독립적인 공간과 서비스를 지원 받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박현희 기관장님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박 정 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안녕하세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정식입니다.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주제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3 경기북부장애인인권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아울러 한 해의 성과를 정리하고 포럼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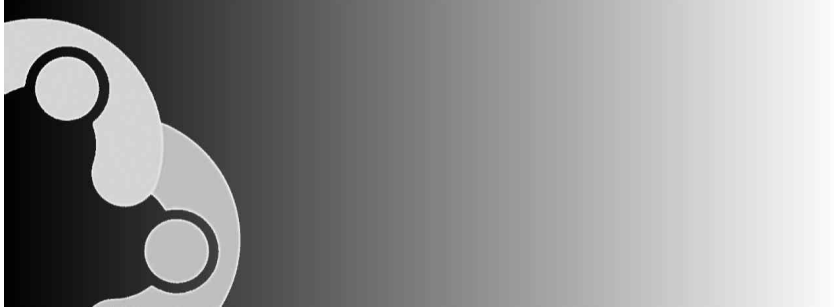
그동안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의 고민을 구체화하여 이를 매년 장애인인권포럼을 통해 장애인 인권의 이슈화를 선도해 왔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고민과 사명감 그리고 성실함과 꾸준함 없이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장애인 학대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2021년 비해 7.3%가 증가했고, 장애인학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8년부터 장애인 학대의심사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 되면서 장애인학대 발견률이 높아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장애인학대 증가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지금보다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장애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장애인학대 발견은 물론 학대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학대피해 회복지원 역시 예방 및 발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인권포럼의 주제인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비단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해 왔을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제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주제 나눔에 그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북부장 애인옹호기관 직원들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3 경기북부장래인인권포럼

**발 제**



## 발 제

## 경기도형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거주지원체계 구축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박 현 희 ]

### I. 들어가며

2008년 국회에서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6조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조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과 학대 발생을 막기 위하여 독립기관을 통해 효과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희생자가 된 장애인들의 신체, 인지 및 심리적 회복, 재활과 사회 재통합을 증진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또는 통합)’에서는 장애인은 주거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적절한 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제공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무이다.

도가니 사건, 염전노예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다.

2017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시작으로 같은 해 전국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다. 2023년 9월 기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피해자 지원, 사후관리 등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권익옹호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회복지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의 치료, 피해의 회복을 의료적으로 돕는 것으로 응급의료조치, 검진·진단, 통원 및 입원치료인 의료지원, 피해장애인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돕기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받는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받게 하는 심리지원, 피해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쉼터입소와 같은 응급보호,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은 복지시설에서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지원,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피해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후견임 선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 등 사법적인 절차에 대한 지원인 사법지원, 장애등록 절차를 연계하거나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피해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복지지원,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 대상의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지원, 피해자와 행위자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하는 중재지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지원 등이 있다.

다양한 지원 중 피해장애인이 피해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거지원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는 의식주로 표현하듯 생활하는 거주 공간은 단순한 집이 아닌 일상의 삶의 철학을 담아내는 전반적 생활의 중심으로서 자신의 장애에 적응하는 일차적 공간이자 물리적 공간을 통해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매개체로서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다.

매년 다양한 학대피해사례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상담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고 법적 정책적으로 보완 되어야 할 지원 유형 중 주거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지원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 II.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 체계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현장조사 시 피해자를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서 일시 보호하기 위해 쉼터입소 등의 응급보호와 이후 피해회복지원과정에서 거주장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주거지원을 한다. 주거지원은 자립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거주시설의 입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실시한다.

주거지원 과정에서 체험홈 또는 자립생활주택을 지원하는 것을 자립전단계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하는 과정을 자립단계로 구분하였다.

## 1. 응급보호

응급보호는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서 일시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응급보호 장소로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 1366 여성긴급피난처, 365쉼터 등을 이용하고 있다.

학대피해쉼터의 경우 현재 3개월 입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장기거주지를 마련하기 까지 연장해서 입소기간의 제한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대피해쉼터는 학대현장에서 응급보호 조치를 위해 필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가 아닌 장기로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 2. 자립전 단계(단기거주지원)

쉼터에서 바로 자립을 지원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자립훈련을 진행한 후 자립지원을 하기 위해 체험홈을 입주하고 있다. 체험홈은 1인 1실의 주거공간에서 자립훈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입주시에 입주인의 자립의사를 매우 중요한 입주근거로 삼고 있다.

자립생활주택은 체험홈 퇴소자를 대상으로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체험홈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 3. 자립지원

체험홈 입소자의 자립지원은 체험홈 운영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권익옹호기관은 체험홈을 거치지 않고 쉼터에서 또는 기존 생활공간에서 자립을 희망하시는 피해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LH임대주택 공고에 따라 신청을 하고 있어 신청에서 입소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쉼터 입소자의 경우 입소기간 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III. 학대피해장애인의 주거지원 단계별 정책

#### 1. 응급보호

##### 가.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및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피해장애인)이 학대가 발생한 장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위해 새로운 거주공간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거주공간 및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남부에 정원 남4인/여4인, 북부에 여성6인이 입소가 가능한 쉼터를 운영중에 있다.

신규입소자는 기존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검사(자가키트 포함)와 전염성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필수로 한다.

입소기간은 최대 9개월 이내로 하며, 학대후유증이 심감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1년을 넘길 수 없다.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입소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는 현재 남4인, 여4인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입소기간은 피해장애인쉼터와 동일하다. 그러나 장애아동쉼터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요하지 않는다.

##### 나. 365쉼터

경기도는 보호자의 병원 입원, 경조사, 여행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일시보호 및 숙식등을 제공하는 365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4개시군에서 거주시설을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4명, 1일 2만원의 이용료가 발생한다.

365쉼터의 경우 운영주체에 따라 학대피해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자 하여 입소비를 감면해준 경우도 있었으나 운영지자체의 주소지를 둔 사람만을 입소대상자로 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입소를 거부하기도 한다.

##### 다. 기타 쉼터 : 아동일시보호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366 여성긴급피난처

아동일시보호소는 경기도에 3개소이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가 있다면 실제 입소가 되지 않고 있으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경우도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입소불가, 또한 편의시설의 부

족으로 중증 지체장애인의 이용에 제한이 있다.

1366 여성긴급피난처의 경우 경기도에 2개소 설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식사, 위생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소가 가능하며,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지체장애인이거나 뇌병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입소기간도 최대7일을 넘지 않고 있다.

## 2. 자립전 단계 지원

### 가. 자립생활체험홈 설치 및 운영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하며 경기도에는 2023년 2분기 기준 23시군 73개소, 정원 14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체험홈은 거주하는 장애인이 4명을 넘을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자립생활주택(누림하우스) 설치 및 운영

경기도는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공간 및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설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퇴소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2분기 기준 7개시군 15개소, 정원3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택설치 기준은 1인가구의 경우 방1, 부엌1, 부부의 경우는 방1, 식사실 겸 부엌1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1인1실 사용원칙을 통한 독립생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3. 자립지원

#### 가.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의 구분과 정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신규건설	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입주자 특성에 따라 6~20년 거주 가능
	장기전세주택	▪ 전세 계약 방식으로 20년간 공급하는 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위의 표는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에 나와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구분과 정의이다. 이처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법의 주거급여를 비롯하여,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의 유형이 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주거지원 정책을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보다는 장애인이 지원 대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유형 】

구분	영구임대	50년공임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10년 공공임대		5년공공 임대	분납임대
						85㎡이하	85㎡초과		
목적	• 최저 소득 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최초 복지 주택	• 영구 임대 주택 중단 이후 건설	• 소득 4분위 이하 계층 주거 안정	• 소득 6분위 이하 계층 주거 안정 (전세 계약 방식)	• 일반 주택 시장 진입이 어려운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	• 장기 임대 비축 • 내집 마련 계층 자가 마련 지원	• 장기 임대 비축 • 중산층 이상 임대 수요 충족	• 내집 마련 계층, 자가 마련 지원	• 내집 마련 계층 자가 마련 지원
임대 사업자	• LH	• LH, 지자체				• LH, 지자체 등			
임대 기간	• 50년	• 50년	• 30년	• 20년	• 6년-20년	• 10년	• 10년	• 5년	• 10년
주택 규모	• 4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45㎡ 이하	• 85㎡ 이하	• 149㎡ 이하	• 85㎡ 이하	• 85㎡ 이하
입주 자격	• 기초 생활 수급자 • 국가 유공자 등	• 청약 저축 가입자 • 철거민 등	•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청약 저축 가입자	• 청약 예금 가입자	• 청약 저축 가입자	• 청약 저축 가입자
임대 조건	• 시세 30%	• 시세 90%	• 시세 60-80%	• 시세 80%	• 시세 60-80%	• 시세 90%	• 시세 이내	• 시세 90%	• 입주 전 30% • 4년 차 20% • 8년 차 20% • 분전시 30%
매각 여부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10년 임대후 분양 (입주자)	• 10년 임대후 분양 (입주자)	• 5년 임대후 분양 (입주자)	• 10년간 분양 대금 분납

###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공급되는 최저가의 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으로 장애인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90%, 2인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선공급자로 월평균소득70%이하 국가유공자 등,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 귀환국군포로로 규정하고 있다.

### 2)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70%(1인90%, 2인80%)이하, 자산보유 기준으로 총자산 29,200만원이하 인 사람에게 입주자격을 주고 있다.

우선공급대상자로는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공급에서는 경쟁시 해당주택이 선설했을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두고 있다.

### 3)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지방공사 또는 LH가 도심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내에서 저렴하게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또는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등 거주자 및 반지하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 재해우려가구, 아동빈곤가구 등은 주민센터에 신청,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등이 주거지우ner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30수준으로 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로 공급한다.

### 4)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을 떠나지 않고 주변 전세주택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입주대상자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대상자에 신혼부부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등 전세지원등이 유형이 있다.

지원절차는 지원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고, 해당 주택의 집주인에게 동의를 득하고, LH의 권리분석 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자는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 등 거주자에게 저렴한 건설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상향 이동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절차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절차와 동일하다.

6)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2013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로 대학생, 청년계층,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입주자격은 입주대상계층별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달리 하여 적용하고 있다.

나. 주택 전월세 자금 융자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융자 제도는 버팀목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제도가 있다.

그러나 학대피해장애인은 대부분 경제적 피해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여 신용으로 자금을 대출 받기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 경기도 자립지원 정책

1)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 근거 :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3조(시설 등 퇴소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등의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통해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등의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초기정착 필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은 도비 30%와 시군비 70%로 구성되며 1인당 15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예산은 765,000천원(도비 229,500천원, 시군비 535,500천원)으로 51명을 지원 대상으로 편성되었다.

하지만 31개시군 중 21개시군 만이 편성되어 있으며 해당 시군 거주시설 등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장기 거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 2) 자립지원금 지원

\* 근거 :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3(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자립 지원)

① 도지사는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장애인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탈시설 장애인과 학대피해장애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조례개정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에게는 자립생활정착금을 학대피해 장애인에게는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2년 2023년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

## 라. 사회적 지원주택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 사회적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하여 신체적·심리적·사회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의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주택이다.

사회적 지원주택은 기존의 체험홈, 자립생활주택과 달리 입주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따라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돌봄 서비스 지원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 지원주택의 공급계획은 미확정이다.

## IV. 권익옹호기관의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 사례

### 1-1 “자립의지가 부족하데요”

○ 인적사항	- 여성/지적/20대
○ 피해내용	- 열악한 주거환경과 비장애인 남동생과의 지속적인 마찰로 학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체험홈 연계하였으나 탈락
○ 어려운점	- 체험홈 입주신청서에 체험홈 입주를 지원하게 된 동기, 입주 준비 및 향후계획, 자립생활에 대한 향후 계획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당사자는 가족과의 분리를 원하는 상황이었으며 자립이라는 말도 지원과정에서 처음듣게되었고 혼자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 - 체험홈 면접 과정에서 자립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며 탈락통보 받음 - 학대피해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본 경험도, 자립이라는 이야기도 처음 듣는 데, 자립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서 다른 장애인과 경쟁하여 체험홈 입주를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듬

### 1-2 “우리지역 주민이 아니라서.....”

○ 인적사항	- 1. 여성/지적/20대 2. 남성/지적/20대
○ 피해내용	- 둘은 남매사이로 가족으로 부터 식사제공 등 돌봄을 제공받지 못함
○ 지원내용	- 두분이 서로 의지하며 지냈고 같은 지역 거주하기를 희망 - 체험홈 중 남/여 공실이 있는 체험홈을 찾아 입주신청
○ 어려운점	- 두분은 모두 자립이라는 말도 알지 못하였고 처음 경찰에 신고할 때 시설에 가고 싶다고 함 - 두분이 시설을 가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험홈 입주 신청 - 체험홈 운영기관과 입주에 대한 조율을 마치고 입주당일 행정청으로부터 다른 지역의 장애인이 “왜 우리지역으로 입주를 하느냐” “이 분들이 자립을 희망하느냐”라는 문제제기를 받음 - 기관에서 학대피해와 입주의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고 입주할 수 있었음

## 2. 임대주택 지원을 못해 고시원으로

○ 인적사항	- 여성/시각/50대/B시 거주
○ 피해내용	- 피해자는 결혼생활동안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옴. - 피해자의 오른쪽 눈 실명과 시각장애가 심해진 이유 또한 폭행 피해로 확인됨. - 행위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가정폭력을 반복하였음.
○ 지원내용	-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통해 이혼소송 진행 중 -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 고시원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면 긴급주거지원 신청 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고시원 입주.
○ 어려운점	- 쉼터를 퇴소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하였지만, 보호입원을 한 남편이 언제 퇴원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하루하루 불안감을 느꼈음. - 그러나 통장관리는 모두 남편이 하고 있어 모아둔 돈이 없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주택마련 불가 - 이혼상태가 아니어서 임대주택 신청도 어려우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사업 또한 사라져서 어떤 방향으로 주거지원을 해야할지 고민이 들고 난감한 사례였음.

## 3. A지역에서 F지역으로 이사를

○ 인적사항	- 지적장애/여성/50대/A군지역 거주
○ 피해내용	- 수년간 행위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행위자로부터 수시로 맞고 욕설을 듣고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았다고 함. - 행위자는 지시만 할 뿐 거의 일을 하지 않음. 일한 대가는 받아본 적이 없음. - 수급비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행위자가 가져갔으며 일상생활과 관련한 많은 부분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함.
○ 지원내용	- 신체, 정서, 경제적 착취 학대 판정으로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 주거지원 관련 주소지 해당 군청 확인했으나 타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주거지원은 어렵다고 함 -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신청하고 선정 여부 기다리고 있는 중

○ 어려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피해 장애인이 거주지 내에서 이사를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재접근하는데 매우 용이하여 재학대를 예방할 수 없음.</li> <li>- 안전상 행위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타 시군, 시도로 주거 이전할 경우 거주 시에서는 주거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피해 장애인 및 관련 기관이 자체적으로 주거이전을 위한 정보수집 및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li> <li>-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어도 해당 사업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여 타 시군, 시도에서 전입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함.</li> <li>- 따라서 피해 장애인이 타시군, 시도 이전을 원할 경우 기 주소지에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학대 피해 장애인의 주거지원 특례 적용 등이 있어 신속한 긴급 주거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li> </ul>
--------	--

○ 인적사항	- 지적장애/여성/50대/시 거주
○ 피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인(가까운 동네이웃)에 의한 경제적착취 피해 다수</li> <li>- 행위자는 피해자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직장도 주거지가 있어 피해자에게 접근이 용이함.</li> <li>- 행위자에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행위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진술을 강요하거나 관련 증거를 삭제하는 등의 추가 피해까지 발생함.</li> <li>- 피해자는 행위자에 의한 경제적착취 피해뿐만 아니라, 가까이 사는 행위자가 또 다시 언제 집으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함. 피해자는 본인뿐 아니라, 초등학생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은 더욱 심할 수 밖에 없었음.</li> </ul>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위자는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진술강요, 증거삭제 등의 행위를 하여 행위자부터의 분리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친딸 함께 쉼터 입소</li> </ul> </li> <li>② LH 임대주택 신청(국민임대/전세형 공공건설 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위자는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는</li> </ul> </li> </ul>

	<p>행위자에 대한 불안감이 심한 상태. 피해자는 행위자를 마주치기 무서워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원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J시에서 벗어나 E시 지역의 LH 국민임대를 신청하여 이사 진행함.</li> <li>○ 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임대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신용불량으로 대출 불가하여 보증금은 친정어머님의 대출로 마련.</li> <li>○ 피해자는 기초수급자이며, 재산은 대부분 행위자에 의해 착취당한 상황으로 이사비용 지원.</li> </ul>
<p>○ 어려운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위자를 고소 조치하였지만, 경찰 조사와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까운데 사는 행위자를 못만나게 강제할 방법은 없음.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피해자가 행위자를 피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li> <li>- LH 임대주택 최초 신청이 23년 1월에 시작하여, 23.5.8 당첨자 발표, 실제 입주는 23.7.10에 진행됨. 최초 신청부터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임. 이 또한 해당 지역의 모집 공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의 최소 시간임. 해당 공고는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닌 바로 입주가 가능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였기 때문에 그나마 빠른 입주가 가능하였음.</li> <li>- 임대주택 신청 과정에서 보증금 마련, 이사비용 마련 등의 금전적인 부분도 어려운 부분. 피해자는 기초수급자이며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이나 이사비용 등 실제 이사까지 제한 사항이 많이 존재하였음.</li> </ul>

4. 임대주택 당첨이 끝이 아님 - 쉼터가 대안이 되지 못하여 여전히 그 공간에 계신 분

○ 인적사항	- 남성/지적/50대
○ 피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는 LH영구임대주택에서 친형과 둘이 거주하였음. 그러나 친형이 사망하게 되자 피해자는 홀로 생활하게 되었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생활하게 됨.</li> <li>- 또한, LH 영구임대주택은 친형의 명의로 주택이었으며, 친형은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승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li> <li>- 피해자는 친형의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관리비가 지속 미납된 채 거주를 하고 있었으며, 다행히 LH에서 사정을 고려해주어 당장의 퇴거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내에 퇴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li> </ul>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지원</li> <li>① LH 임대주택 신청(국민임대/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는 기존에 살고있는 LH 임대아파트에서 지속해서 살기를 원하고 있었음. 또한, 해당 지역의 많은 이웃주민들이(경로당 주민 등) 피해자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주는 등 지역주민과 유대감 또한 높은 상황이었음.</li> <li>○ 동일한 LH 임대아파트의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해자 해당 공고에 지원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됨.</li> </ul> </li> </ul>
○ 어려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행히 신청 접수가 높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지만, 예비 순번 7번을 부여 받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기 때문에 예비순번이 도래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실제 입주까지는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음.</li> <li>- 최초 22.09.26에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23.01.16에 예비입주자 선정되어 예비 순번 7번 부여 받음.</li> <li>- 현재 예비순번 1번까지 도달한 상태이지만, 입주 계약까진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해당 임대주택 자체가 퇴실이나 공실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주택이라 예비자가 쉽게 빠지지 않음.</li> <li>- 해당 공고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기 때문에 지원하여 당첨된다하더라도 예비입주자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일뿐,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LH 임대주택의 모집공고 같은 경우 즉시 입주가 가능한 모집 공고보단 퇴실이나 공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훨씬 더 많음.</li> <li>-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는 것 또한 쉬운 것이 아니며 경쟁률이 치열함. 그러나 피해자같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음에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입주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li> </ul>

## 5. 임대주택 찾아 삼만리

<p>○ 인적사항</p>	<p>- 여성/지적/60대/F시 거주</p>
<p>○ 피해내용</p>	<p>- 행위자는 친오빠로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었음. 과거엔 행위자가 피해자를 잘 챙겨주었지만 행위자가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었음. 피해자의 거주지는 2층의 주택 형태로 급격한 경사의 계단을 올라야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었음. 행위자는 다리를 다치게 되면서 목발 또는 휠체어를 이용해야지만 외출이나 병원진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해당 주거지의 환경은 병원진료뿐 아니라 외출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의 주거지였음.</p> <p>- 행위자는 이러한 주거 환경속에서 제대로 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해 다리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행위자는 건강 악화로 예민해져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가 지속해서 발생함.</p> <p>-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고령에 거동이 편치는 않아 해당 급경사가 있는 주거지 환경은 언제든지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환경이었음.</p>
<p>○ 지원내용</p>	<p>① 피해장애인쉼터 입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적학대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행위자와 분리조치 필요하여 피해자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진행</li> </ul> <p>② LH 임대주택 신청(국민임대/전세형 공공건설 임대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병원진료나 기본적인 외출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의 거주지가 큰 원인이라고 판단함.</li> <li>○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은 낙상사고의 위험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외출이 제한되며, 행위자는 꾸준한 병원진료가 필요한데도 해당 진료나 외부 지원 또한 불가능한 상황의 주거 환경이었음.</li> <li>○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주거지로 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LH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H시 소재의 임대아파트로 이사 진행.</li> </ul>

<p>○ 어려운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임대주택 최초 신청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전자계약이 어려우며, 현장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 또한 보증금 입금, 계약 체결 등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방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할 때마다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여 일일이 현장에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 있음.</li> <li>- 22.1월 최초 청약신청부터 22.3월 당첨자발표. 22.9월 실제 입주 진행.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실제 입주까지는 짧지 않는 기간이 소요됨.</li> <li>- 해당 지원 시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진행되어 시기상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곤 생각되지 않음. 하지만 모집공고가 진행되지 않거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모집 공고였다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임.</li> </ul>
---------------	---

<p>○ 인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지적/30대/c도에서 전입</li> </ul>
<p>○ 피해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편의 수감으로 인해 불안한 지적장애 부인이 일정거소 없이 생활하며 2차피해 발생</li> </ul>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편의 출소 전까지 피해장애인쉼터 입소 지원</li> <li>- C광역시의 임대주택 기간 도래에 따른 이사 및 청소 지원</li> <li>- 출소 후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고시원 입주</li> </ul>
<p>○ 어려운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H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하였으나 전세임대는 입주예정자가 주택을 구하고, 해당 주택의 집주인의 동의를 득하는 과정이 필요함</li> <li>- 이에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주택방문하여 입주의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입주</li> <li>- 피해자에게는 주거지원이 꼭 필요한 과정이었으나 권익옹호기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드는 사례였음</li> </ul>

## V. 학대피해 장애인의 거주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섭게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주거의 문제는 주거취약계층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이며 몇년사이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해있다. 국가와 사회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지원해야하는 당연하다. 그러나 여러 취약계층중에서도 장애로 인한 사회적어려움과 학대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정책에서의 우선 순위는 무엇보다 절실하다.

지금처럼 학대피해장애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권익옹호기관의 직원들이 LH홈페이지를 살펴보고 나의 지원자에게 맞는 임대주택의 공고가 나오기를 바라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에서는 최소한 벗어나야한다.

학대피해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제공되는 주거공간은 학대피해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환경을 갖추어야한다. 단순히 물리적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독립생활과 주거유지를 돕는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함께 결합되기 위한 사회의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주거지를 다양한 이유로 상실한 사람에게는 신속하게 공공임대주택 등의 안전한 주거공간이 지원되어야 한다.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주거를 확보하고 안정감을 갖도록 해야한다.

장애인이 갖고 있는 이동의 어려움과 취업, 의료지원등의 사회적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의 접근이 용이한 접근성이 있는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학대피해장애인 중 주거지원 대상의 경우 실제 보증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제공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런 원칙에 기준으로 다음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쉼터인력 증원 및 추가 설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쉼터의 기능으로 임시보호, 의료지원, 상담지원, 사회복귀 지원, 새로운 주거공간으로의 정착 지원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지원인력의 부족으로 임시보호 기능이외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익옹호기관의 업무와 쉼터의 업무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기에 쉼터의 인력 지원을 통해 쉼터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대피해장애인의 쉼터는 경기 북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입소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또는 남성인 경우 서울쉼터나 남부 쉼터로 입소지원을 하기도 한다. 원거리에 입소자가 있는 경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입소자보다 지원횟수가 적게되고 보다 세밀한 지원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의 학대피해장애인 쉼터를 추가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피해장애인 쉼터의 입소는 개인을 중심으로 자녀가 어릴 경우 등 특수한 경우만이 동반입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학대피해자 개인, 학대피해자 부부, 학대피해자 모녀, 학대피해자 모자 등 다양한 인원 구성 형태로 입소할 수 있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2. 365 쉼터의 입소 대상자 확대

365쉼터 및 긴급돌봄서비스(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는 입소대상자를 보호자의 병원 입원, 경조사, 보호자의 여행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소대상자를 학대피해장애인까지 확대하여 긴급하게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쉼터의 보완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365쉼터를 학대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기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시설과 병행하여 운영되는 곳이기에 타이용인과의 문제, 긴급하게 짧은 기간 제공되는 장소이기에 공간이동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완적 형태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 3. 자립지원금의 지급

학대피해장애인 중 지역사회자립을 하시는 분들에게 초기정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자립생활정착금에 준하는 자립지원금의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

## 4. 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신청에 있어 우선권 부여

현재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의 입주를 위해서는 공실을 확인하고 공실이 없으면 대기를 걸거나, 공실이 있으면 입주신청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거쳐 피해자의 자립의사를 확인하고, 최종 심의를 거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체험홈은 자립을 지원하는 곳이기

에 자립의사를 중요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학대피해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자립의지가 높은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는 가장 취약한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한 절차는 아니다. 따라서 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의 입주자 심의과정에서도 학대피해장애인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우선 순위를 배정하여야 한다.

현재 경기도는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과 관련하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이하 누리센터) 내에 자립지원팀에서 자립전환지원체계 구축 사업으로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누리하우스] 시범운영 및 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운영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체험홈 또는 자립생활주택의 입주와 관련하여 지금처럼 권익옹호기관이 개별 체험홈에 공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닌 자립생활주택과 체험홈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누리센터 자립지원팀에서 공실에 대한 확인 및 입주에 대한 역할은 하는 체계로의 변경이 필요하며, 학대피해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을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사회적지원주택 및 임대주택 신청 등의 주거지원에 있어 우선권 및 보증금 지원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은 운영주체가 매입이나 임대의 방법으로 마련한 주거공간에 입주자가 임차계약을 맺는 형태이기에 보증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입주자의 입장에서 나의 주거공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2년이라는 입주기간의 제한이라는 한계를 갖게된다.

따라서 입주자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게되는 사회적 지원주택이나 임대주택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온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대피해장애인의 상황에서 보증금이 일반시세의 30%이고 그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일지라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출을 받고자 하여도 학대피해나 그외의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 채무들이 존재할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앞의 사례에서 처럼 타시군으로 지역을 변경해야하는 학대피해장애인의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신청권과 임대 보증금 지원을 위한 방안은 시군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기도의 정책으로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VI. 마치며

전국 등록장애인 중 22%가 경기도에 거주(2022년 12월 기준)하고 있으며, 2022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행한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는 가장 높은 21.5%의 학대의심신고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돌봄이 필요한 요보호대상자들에 대해 돌봄과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보호를 선택하여 시설을 중심으로 돌봄 및 서비스지원체계를 구축해왔다. 그러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움직임속에서 장애인의 주거를 중심으로 한 정책과 서비스 체계의 변화를 위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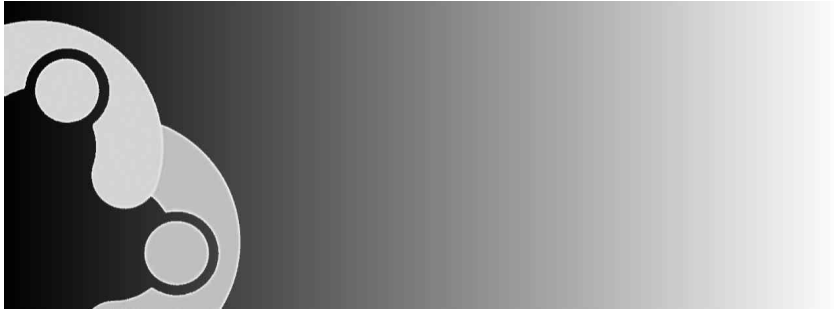
현재 경기도의 학대피해장애인 관련 지원체계는 권익옹호기관의 2개소, 학대피해장애인쉼터 2개소, 장애아동쉼터 2개소 설치·운영 등 학대의 신고접수부터 응급분리까지의 지원체계의 구조적인 부분들은 부족하지만 갖추어졌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학대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위한 지원체계에 있어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이상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여부를 상담원 개인의 업무능력에 의한 편차가 발생하거나 체험홈 공실이 마치 빨리 파악이 되어서, 임대주택 공고시기랑 잘 맞아서, 운이 좋아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닌 공적인 체계에 따라서 언제나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가장 취약하고, 사회적 지원이 가장 절실한 학대피해장애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기도의 장애인정책, 주거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3 경기북부장래인인권포럼

## 토 론



# 피해장애인쉼터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

이 주 목 /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원장

### I. 여는 글

201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애인 학대 관련 사건(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후 2015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쉼터가 설치, 운영이 시작되었다.

2015년 피해장애인쉼터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내 사업으로, 전국에 4개소(서울, 경기, 경북, 전남)가 선정되어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11월 현재 전국 25개소(피해아동쉼터 6개소 포함)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피해장애인쉼터의 개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장애인쉼터를 운영하는데는 현실적인 한계(인력 부족, 공간 협소 등)가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 II. 시설 운영의 한계점

#### - 인력의 한계

피해장애인쉼터가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장애인단기보호센터 내 사업으로 시작하여 운영될 때, 쉼터 입소정원은 4명, 시범사업에 따른 인력 3명, 기존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시설장 1명, 직원 1명으로 총 5명이 투입되어 4조 2교대 근무를 운용하였다. 4명의 인력으로 입소 이용인들의 식사 준비, 프로그램 진행, 의료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력 부족의 어려움이 있었고, 시범사업 특성상 예산 또한 3명의 직원 인건비로 대부분 지출되었기에 입소 이용인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들은 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의 인적, 물적 지원을 받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21년 피해장애인쉼터가 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와 분리되어 운영될 때까지 이러한 어려움은 지속되었다.

2019년 빌라를 매입하고 2020년 이전 준비를 하며 입소정원 8명, 직원 정원 6명으로 세팅되었고, 2021년 1월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라는 명칭으로, 장애인복지시설로써 운영하였다.

현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에 맞춰 주간 근무자인 원장과 팀장, 생활지도원 4명으로 4조 2교대 근무 편성을 하였다. 평일 주간 근무자의 경우 (원장과 팀장 제외) 최소 1명~최대 2명이 근무하며 식사준비(장보기 포함), 입소 이용인 케어, 실내 프로그램 진행, 의료지원, 외부활동 지

원(문화여가, 사회기능회복 등),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활지도원들은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입소 이용인들에게 최대한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미용서비스, 요리교실, 독서치료 등). [표 1] 참조

[표 1] 센터 생활지도원 주요 자격증 보유 현황

직책	구분	주요자격증
생활 지도원	A	사회복지사 2급 / 심리상담사 1급
	B	사회복지사 2급 / 미술치료사 2급 / 한식조리사
	C	사회복지사 2급 / 미술치료사 2급 / 미용사
	D	사회복지사 2급 / 심리상담사 1급 / 미술심리치료사 1급 / 분노조절상담사 1급

아래의 [표 2]를 살펴보면 의료지원, 문화여가, 사회기능회복 등 100%를 초과달성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현 인력으로 입소 이용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주요 서비스 실적 및 달성률(2023년 10월 31일 기준)

사업명	누계	연목표	달성률
성/인권교육	20	24(건)	83
소방/안전교육	3	4(건)	75
교육활동	743	832(명)	89
의료지원	131	80(명)	164
심리상담	85	100(명)	85
심리재활	58	40(명)	69
문화여가	1,357	832(명)	163
사회기능회복	472	416(명)	113
별빛체험	1	1(건)	100

또한 입소 이용인 중 한 학기 동안 중학교 등·하교를 지원하여야만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직원의 출근 시간 조정(8시 20분까지 출근)이 불가피하였고, 상담센터 등 필히 이동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는 프로그램 동선과 시간을 맞춰 지원을 하거나 타 입소 이용인들에 대한 불이익(프로그램 미진행 및 취소, 일정이 미뤄지는 등)을 감수하며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타 지역으로의 원거리 이동 지원 등에는 인력적, 시간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 - 공간의 한계

2019년 장애인단기보호센터(피해장애인쉼터)가 남·여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 증축에 대한 기능보강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증·개축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 때 몇몇 곳의 후보지를 선택하여 접수를 하였으나 지역사회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는 기준과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국고보조금 추가 예산 신청 안내'에 기대된 신축, 증·개축 사업의 기준 단가(1,397천원/㎡)에 맞출 것이라는 조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현재의 피해장애인쉼터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다.

매입 된 피해장애인쉼터 건물은 전용면적 76.08㎡(약 23평)로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및 부엌으로 나누어져 있다. 피해장애인쉼터 개소시 남성 입소 이용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 피해장애인쉼터를 운영해 본 결과 여성 입소 이용인과 남성 입소 이용인을 별도의 공간으로 나누어 보호하기에는 상호 이성 간의 인권침해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6월 21일 진행된 경기도 정담회의에서 피해장애인쉼터 내 남·여 분리 등 안전한 공간 확보에 대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박재용 도의원님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인하여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보듬)와 같이 LH주택공사를 통하여 남성 입소 이용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7월 7일 동두천에 위치한 빌라 3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3채는 각각 사무동, 여성쉼터, 남성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 III. 한계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

경기도에는 피해장애인쉼터가 2곳이 있다.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와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보듬)로 각각 포천시와 수원시에 소재해있다.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는 앞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여건상 여성 전용 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보듬)는 남성 입소 이용인 4명, 여성 입소 이용인 4명의 정원으로 운영 중에 있다.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보듬)의 2022년 입소 이용인 중 남성 11명, 여성 13명이었으며, 평균 남성 쉼터 입소 이용인은 3명이었으나, 2023년 남성 8명, 여성 14명이며 남성 입소 이용인 정원 4명을 다 채운 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이며, 여성 입소 이용인 정원 4명을 채워 이용하는 기간(평균 3명 입소 유지, 올해 4인 이상이 지낸 것이 4월~10월)이 더욱 긴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2022년 여성 입소 이용인은 17명이었으며 월 평균 입소 이용인은 4명이었으나, 2023년 입소 이용인의 경우 11월까지 11명의 여성 피해장애인이 입소하였고 월 평균 이용인원은 5명이었으며, 최대 7명까지 동시에 이용하였다. 이는 피해장애인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여성 전용 피해장애인쉼터로 운영 하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시설 설치시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최소한의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여성 전용 쉼터로써 직원 성비가 남성 1명, 여성 5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나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보듬)의 경우 남·여 공간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직원 성비가 남성 3명, 여성 3명, 계약직 여성 1명의 인력이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이성간의 케어가 불가피하며, 이는 인권침해의 큰 위험성이 내제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시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보듬)의 이성간의 케어 등 실질적인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보듬)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총원하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IV. 맺는 글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는 같은 시기에 설치된 시설로써 각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만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을 관리하고 케어한다는 점에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패밀리십으로 유기적인 연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의 고민 중 하나였던 공간협소에 대한 해결과정을 돌아볼 때, 입소 이용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 확보, 계약 등 근본적인 요소들은 경기도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기도와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가 삼위일체가 되어 협치·협력이 이루어질 때,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내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의 ‘살고 싶은 쉼터, 행복한 쉼터, 동행하는 쉼터’라는 미션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학대피해장애인의 주거지원 방안 마련

김 병 태 /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학대피해장애인의 주거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 발제의 내용에 공감합니다. 2017년 초에도 N시에서 학대피해를 당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긴급 분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거지원을 위한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몇일간은 개인주택에서 잠시 머물다가 체험홈에 자리가 나서 체험홈 입주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학대피해장애인 쉼터가 2곳이 있지만 인원이 항상 차 있고 인력 또한 충분치 않아서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공간 보다는 학대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 되서 일시적인 주거대책 만으로도 버거운 실정이고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가 경기도에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한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장애인자립생활주택(누리홈), 경기도장애인지원주택(실시는 2024년도 예정), 2023년 보건복지부 탈시설정책 추진으로 진행 하고 있는 지원주택 3개 시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여타의 365 쉼터는 일시적인 보호기능을 하고 있기에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원주택과 관련한 조례가 있고 장애인지원주택과 관련한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주택공사가 있고 몇몇 지역에서 LH와 MOU계약을 맺으면서 장애인지원주택과 관련한 협력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장애인지원주택과 관련한 수요는 3년간의 시범사업으로(2025년까지) 경기도에서 60채를 목표로 하고 있고 경기도지원주택은 50채를 입주 물량으로 예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제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각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은 입주자격을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탈시설 장애인을 제 1순위로하고 타지역에서 체험홈에 입주하는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입주를 제한하는가 하면 왜 우리시에서 떠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각 시군의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 각 시군의 시의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왜 우리 시군의 입주자가 아닌 타 시군의 입주자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기에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입주자격과 관련한 지침에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입주와 시군을 불문하고 필요한 자리에 즉시 들어 갈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탈시설과 자립생활 및 학대피해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한 주거지원 정책은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입주를 시작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72개소와 장애인자립생활주택으로 4개소가 실시중이며 2년의 체험을 마치고 지역사회로 자립주택을 신청해서 지역사회로 정착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일시적이고 시범적 사업의 성격으로 전체 주거지원 정책에서 실시 된 사업이 아니라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고 이제야 주거지원 + 서비스가 결합된 자립생활지원주택 사업을 실시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도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앞으로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한 주거지원은 정책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장애인자립생활주거지원서비스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속에서 체험홈, 자립주택, 학대피해 장애인 주거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고 자립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입주를 위한 자격에 대한 심사의 폭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대피해장애인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체험홈 입주자격을 적용시키고 이후 2년 후에 현재 경기도와 각 시군이 매칭해서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하고 있기에 2년 후에 정착금으로 보증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가능하고 처음 들어가는 입주주택에서 환경의 변화없이 계속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매입임대주택이나 자립지원주택 보증금을 마련할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학대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장애인지원주택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내용을 담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제5조(입주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① -----. 이 경우 선정기준과 절차, 우선순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방임·학대 등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한 사람인 경우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에서 사회복지시설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생활하면서 학대피해를 당한 장애인을 넣는다면 입주자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2조 2항에 따르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이미 주거약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기에 이 규정을 활용해서 지원주택을 확보해 간다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원주택의 유형에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과 자립주택을 포함 시키면 전체 지원주택의 범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게 되고 지원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필요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을 만들고 자립주택의 체계를 주장하면서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체계를 만드는 것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정책을 만들면서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통합시킨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인 주거지원정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이를 각 단위에서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장애인과 관련한 지원주택기간 노숙인을 위한 기관등으로 영역별로 분산을 해야 할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지만 이미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등을 통해서 경기도 지역에서 안심주택 등으로 유사한 사업들의 경험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합적으로 진행하되 개별영역에서 특수하게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독립되어서 그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입주자 선정과 관련해서 도지사 5조 4항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운영지침에 학대피해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서 2024년도 지침에 반영해서 진행된다면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도 들어 갈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침에 명확히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에서 벌어지는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구제는 긴급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대피해장애인이 지역을 떠나는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가해자가 떠나는게 맞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지역을 떠나는 상황이야말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 한 듯 합니다.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마련은 긴급한 분리를 위해서는 쉼터의 확충이 필요하고 지역에 정착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방안으로는 경기도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고 충분한 물량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주택공사가 마련하는 주택량의 일정한 비율을 지원주택으로 배정하고 이에 맞는 지원기관을 통한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경기도의 지원주택은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거를 보장하는 경기도가 될 것 입니다.



## 학대피해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고려사항

이 정 규 /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센터장

주거기본법과 주거약자법의 시행 이후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은 주택의 접근성, 공간 활용을 위한 설계, 적정 주거비 수준, 입주 후 주거유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연계 등 장애인에 대한 주택공급부터 주거유지까지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되어 지원되는 사례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매우 큰 사각지대로 존재한다. 가정 또는 시설에서 학대피해를 당하여 긴급히 가해자(집단)으로부터 분리해야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주해야하며, 필요에 따라 영구적으로 거주해야할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에게 기존의 공공주택 공급 프로세스 내에서 지원에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해왔던 것들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여 현장에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 고민속에 담아야 할 내용은 많지만, 이 글에서는 필자가 우선적 고려사항이라고 여기는 몇가지 사항만 언급한다.

첫째,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는 공공임대사업자(LH, GH, SH 등)의 입주자 모집계획에 의하여 모집공고를 게재하고 해당 일정에 맞춰 입주자를 심사·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체계를 갖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기초지자체의 입주대기자 명단에 누적된 인원 규모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3~4배수로 접수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해당 주택의 공사발생시 순번에 맞춰 입주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기간은 해당지역의 임대주택 공가, 신규 공급 여부에 따라 매우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일부지역의 경우 영구임대 및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대기기간이 몇 개월에서 몇 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대기순번에 의한 주택공급은 응급하게 주택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당장 거처가 없는 사람들이 해당 절차를 거치는 기간 동안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을(ex 응급쉼터, 긴급임시주택 등) 지원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시로 접수하여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현행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주거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접수하여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타 임대주택 공급체계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담보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학대피해는 사회적 상황으로서 응급한 주택지원을 전제로 한다면,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에 부합하는 접근성을 갖춘 주택의 지원도 함께 전제되어야 한다. 입주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생활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및 지역자원 접근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해야 한다.

또한 주택 내부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주택 전반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을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 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이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셋째, 안전과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학대피해는 일종의 범죄 피해자이므로, 가해자(집단)와의 분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해자(집단)에게 피해자가 입주한 주택의 위치 등 정보가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2차 가해 등을 대비한 다양한 보안 및 대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그 부분이 주택 내부 시설에 반영되어 구비될 필요가 있다. 이는 주택 시설의 설치를 넘어 정부 및 지자체, 운영기관, 주택공급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주거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택에 입주한 이후 주거유지를 위한 지원 수요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활동보조, 스스로 주택의 관리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주택관리지원, 지역 복지 자원 및 일자리 연계, 주택 유지를 위한 임대료 및 사용료 부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아울러 학대피해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유지를 위한 지원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최근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러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된 부분을 참고하여야 한다.

다섯째,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 공공임대주택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필수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 확보, 공급, 입주 과정, 입주 후 재정착 부분에서도 많은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주거지원 필요성을 공감하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주거복지 지원체계가 수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이 토론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 사회적 지원주택의 의미, 학대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유 호 준 / 경기도의원

## I. 들어가며

제 지난 1년 반의 정치활동, 더 길게는 2011년부터니 13년째 하고 있는 사회운동의 맥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양성’입니다. 사람의 삶은 표준화될 수 없고,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기조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삶을 표준화하고 극히 제한적인 선택지를 강제했습니다. 형제복지원이 그랬고, 소록도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과거가 잘못된 역사였음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다양한 시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사실 지금까지도 대다수 장애인들의 선택지는 주거시설이었습니다. 그것이 장애인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장애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세뇌’당했지만, 그 현실에 대해 왜 다른 선택지는 주지 않냐고 묻기 어려웠습니다. 그조차 없으면 정말 생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회적 지원주택은 장애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들에게 단순히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포함한 활동보조 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등 삶의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하게 된다면, 시설 외에도 장애인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죠.

## II.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학대피해장애인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학대 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서 일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쉼터의 경우는 3개월 입소를 원칙으로 하는데, 임대주택을 제공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1년까지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중증 학대 피해자들의 경우 지원주택 제공이 필요하지만,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에서 입주자 선정 기준이나 방법을 수립할 때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가산을 하거나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학대 피해 장애인의 경우 긴급성을 따져서 가점을 준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한데요. 경제적학대 피해자의 경우 사실상 가진 자산이

없어서, 쉽터에서 지내면서 수급비를 모아서 보증금을 만들고 나서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을 하거나, 보증금을 분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는 경기도의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및 이자 지원 사업을 연계할 수 밖에 없는데, 은행권이나 신용보증재단 등의 협력이 필요한 일이겠지만, 지금까지는 중증장애인들이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보증 사업들이 많이 없었던터라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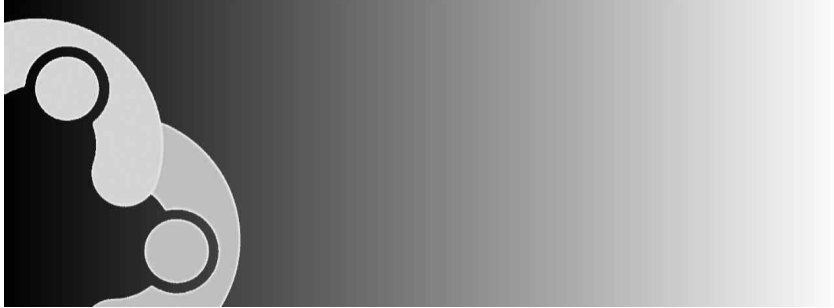
### III. 현재 경기도의 지원주택은?


현재 경기도의 지원주택은 주택정책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장애인자립지원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정신건강과 4개 과가 모여서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주택의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내년 예산에 46호 정도를 선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46호를 반영했고,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다른 유형의 지원주택들이 계속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개의 정책부서와 4개의 실행부서에서 지원주택 계획을 세우고, GH와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와 운영을 맡을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가진 자산, 예를 들자면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활동보조지원, 의료원을 통한 의료지원 등 역량을 끌어모아서 진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IV. 마치며

지원주택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다 바리스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요즘은 또 발달장애인들이 화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저는 발달장애인들이 바리스타도 화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바리스타나 화가가 꼭 되고 싶어하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발달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처럼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구요. 저는 지원주택이 장애인 주거에 다양한 선택지가 되고, 이 선택을 한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노동하고, 호흡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3 경기북부장래인인권포럼

## 활동보고



## 보고자료 1

# 2023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보고서

-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변화 및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 I. 들어가기

###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 변화 모니터링의 시작

경기도는 2012년 4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경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8년에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2017년부터 1,2차를 진행하며 10년간의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부터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다.

<표 I-1-1>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진행 현황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1차 (2013~2017)	경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2차 (2018~2022)	경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3차 (2023~2027)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경기도의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는 순차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발의·제정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조례에 따라 시·군에서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목표 수립과 예산확보를 위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로 형식상으로만 세워진 계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 평가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이행사항 모니터링은 현재에 대한 평가와 차기 계획 반영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구성원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참여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 2. 모니터링의 근거와 단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 제3항 제4호<sup>1)</sup>에 의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1차 모니터링을 2019년에 진행하였으며, 직전년도와의 변화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2차 모니터링을 2020년에 진행하였다. 2023년에는 2차 모니터링 이후 3년이 지난 지금의 변화정도와 시·군의 이행정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다.

### 가. 사업목적

- 경기북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인권증진을 통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지향
- 체감도 있는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제 발굴 및 실효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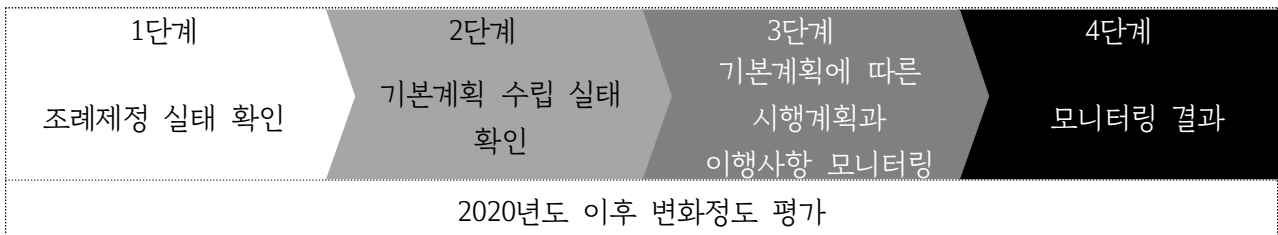
### 나. 사업목표

-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의 기본계획에 대한 단계별 추진 확인 평가
- 추진과제 또는 시행계획 이행정도 정책 평가

### 다. 사업범위

-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라. 사업추진단계



1)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 생략 -

③ 권익옹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 및 시정권고
2.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예방교육 등 교육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4.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5.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6.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7.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8.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의5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차별금지 업무
10.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 II.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현황

### 1. 사업추진 1단계 : 조례제정 실태 확인

가. 사업 추진 방법

- 1차.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 2차. 시군 질의

나. 결 과

<표 II-1-1> 경기북부 10개 시군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 정	개 정	질의응답	변화정도
가평	가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2.29	2018.04.11	-	-
고양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10.08	2021.11.09	-	일부개정
구리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04.20	-	-	-
남양주	남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04.06	2019.04.11	-	-
동두천	동두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11.18	-	-	-
연천	연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6.07.08	-	-	-
의정부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20.09.22	-	-	-
파주	파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5.14	2019.12.27	-	-
포천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4.12.29	-	-	-
양주	해당 사항 없음.	-	-	제정준비中	-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양주시만 유일하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2020년에 비해 변화를 보인 곳은 고양시 1개의 시군이었고, 나머지 8개 시군은 별다른 변화 정도는 없는 상태였다.

양주시는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한 발의 준비 중이라 응답하였으며, 고양시의 경우, ‘장애인분야 인권영향 평가 인권증진위원회’의 검토 의견에 따라 조례상 차별적 요소가 있는 표현을 일부 재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sup>2)</sup>에 따라 일부 용어와 표현을 어문 규범에 맞게 고치는 변화가 있었다.

예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장애인을 정의하고, 장애인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보호자’라는 단어를 ‘법정대리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_법제처 발간물

## 2. 사업추진 2단계 : 기본계획 수립 실태 확인

### 가. 사업 추진 방법

- 1차. 시·군 인터뷰(질의) 및 자료공유 요청

### 나. 결 과

<표 II-2-1> 경기북부 10개 시·군 기본계획 수립 현황

구 분	기본계획 연구	회기	조례제정 시기	수 립	질의응답	변화정도	비고
고양	고양시 장애인 차별실태 조사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2	2015.10.08	2021.11	-	-	-
남양주	남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	2015.04.06	2019.02	-	-	2차수립 진행중
구리	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5	2015.04.20	2022.09	-	-	대체수립
연천	연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	1	2016.07.08	2018.01	서면응답	1차종료후 2차미수립	2022년 1차 종료
가평	해당 사항 없음.	-	2012.02.29	-	서면응답	없음	2024년 이후 수립예정
동두천	해당 사항 없음.	-	2013.11.18	-	서면응답	없음	추후 수립 예정
의정부	해당 사항 없음.	-	2020.09.22	-	서면응답	없음	예산확보시 계획 수립
파주	해당 사항 없음.	-	2013.05.14	-	서면응답	없음	2023년 수립예정
포천	해당 사항 없음.	-	2014.12.29	-	서면응답	없음	수립 중장기 검토
양주	해당 사항 없음.	-	-	-	-	-	-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조례가 제정된 곳은 총 90%인 9곳이며 그중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은 총 8곳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2020년 모니터링 당시 4곳이었는데 이 중 연천군이 1기 기본계획 종료 후 2기 수립을 진행하지 못하여 3곳으로 줄어들었다. 즉,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는 수립에 관한 계획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시·군인 가평군, 동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와 기본계획이 있었으나 중단된 연천군을 중점 관찰 대상 시·군으로 결정하여 보았다.

### 다. 중점 관찰 시·군의 변화정도

#### 1) 가평군

가평군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2012년에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곳이며, 조례상 수립기한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히 명시된 유일한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후 약 11년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이다. 이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을 질의 한 결과 현재보다 2년 뒤인 2024년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특별히 2024년 이후인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 2) 동두천시

동두천시는 가평군과 파주시 다음으로 2013년에 조례를 제정한 시·군으로, 2020년 모니터링 당시 ‘동두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해 ‘장애인복지종합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대체수립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현재,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같음하고 있고 연차별로 수립되어야 하는 시행계획을 추후에 수립한다고 답변하였다.

「동두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살펴 보면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으로 대체 수립한다는 내용이 없는 관계로 이를 같음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며, 기존 조례를 개정하거나 별도의 조례를 수립하기 전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별도 수립하는 것이 좋은 방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포괄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복지종합계획으로 대체수립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영역이 축소 될 수 있기에 이는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의정부시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가장 최근인 2020년 의원발의를 통하여 조례가 수립 되었으며, 동두천시, 연천군, 남양주시와 유사하게 정책의 방향이 잡혀 있으나 수립시기등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곳이다.

현재, 예산부족등의 사유로 기본계획의 수립은 준비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 시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해당조례의 제3조(시장의 책무)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되어 예산확보가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그 결과가 꼭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4) 파주시

파주시는 동두천시와 같은 해인 2013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조례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없이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만 담겨져 있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던 곳이었다. 이는 목표와 연구 없이 시책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며, 재정확보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아, 단계별 발전 방향이 아닌 1년 단위 사업으로 예산 종결 시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에 이번 모니터링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계획은 없는 상황이고, 시행계획은 2023년 12월 중으로 수립 할 예정이라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 5) 포천시

포천시와 같은 경우는 2019년 1차 모니터링 당시, 분산된 포천시의 장애인 관련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로 제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2020년 2차 모니터링 시엔 이와 관련 된 조례가 실질적으로 제정이 완료 되어 있었다.

위 조례는 기존 「포천시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외 5개의 조례를 폐지하며 통합을 시도한 장애인 복지종합계획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하여, 장애인 이동권보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등의 중요 정책단위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다른 조례들은

폐지가 되었으나 기존 의견에 따라 통합하고 폐지를 하겠다던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폐지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비추어 보아 조례상으로는 ‘장애인복지종합계획’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한 결과 포천시는 현재,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세부사업으로 장애인식개선 사업(관련사업 1종)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보장 사업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 하였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계획은 없으나 중장기 검토를 할 예정이라 답변하였다.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에는 구리시의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있어 기존 6개의 조례를 폐지하며 만들어낸 이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이 단순히 몇 가지의 사업만으로 대체 되지 않을까 했던 우려가 현재 실질적으로 1종의 사업만을 포함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났다. 참고로, 포천시는 2014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약 6년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표 II-2-2> 가평군, 동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조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내용**

구 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내용	수립기한	내용	수립기한
가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사업계획</li> <li>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유형별 세부시책</li> <li>3. 정책과 실태조사 지표개발</li> <li>4.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li> <li>5. 군민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li> <li>6.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및 자원조달 방안</li> <li>7. 그 밖에 필요사항</li> </ol>	수립기한 없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추진방안</li> <li>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시책</li> <li>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li> <li>4. 교육계획</li> <li>5. 그 밖에 필요사항</li> </ol>	수립기한 없음.
동두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li> <li>2.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 과제 및 방법</li> <li>3.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li> <li>4.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li> <li>5. 행정 및 재정지원방안</li> <li>6. 그 밖의 인정사항</li> </ol>	수립기한 없음.	관련내용 없음.	관련내용 없음.
의정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li> <li>2.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li> <li>3. 정책 개발 및 추진전략</li> <li>4.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li> <li>5. 행정상재정상의 지원방안</li> <li>6. 그 밖의 필요사항</li> </ol>	수립기한 없음.	관련내용 없음.	관련내용 없음.
파주	관련내용 없음.	관련내용 없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편의제공 세부시책</li> <li>2. 실태와 대응방안</li> <li>3.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li> <li>4. 그 밖의 인정사항</li> </ol>	매년 수립시행
포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방향</li> <li>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유형별 시책</li> <li>3. 정책개발 및 실태조사</li> <li>4. 교육 및 홍보</li> <li>5.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li> <li>6. 자원조달</li> <li>7. 그 밖의 인정사항</li> </ol>	수립기한 없음.	관련내용 없음.	관련내용 없음.

6) 연천군

연천군은 2018년 1월에 1차 기본계획이 5대 정책목표, 32개 핵심과제, 73개의 추진사업으로 수립되어 시행되었으며, 노인 인구비율이 높아 자연스럽게 장애인 인구비율 중에도 60대 이상 노인장애인이 53%에 해당하는 지역인 만큼 건강권·의료권에 대한 목표가 집중되는 특징이 있는 사업으로 2022년에 사업을 마감하였다. 하지만 연천군의 조례상 재 수립기한이 없어 어느 시점에 재평가를 통해 목표를 수정할지는 알 수 없었던 지역이었는데 실제로 2차 기본계획이 1차 이후에 연결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추후에 계획 수정하여 수립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2020년 모니터링 당시 연천군은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의 확보로 사업 추진 이행률이 6.8% 정도에 머물러 있었으나, 홍보 실적 만큼은 연평균 3회 이상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특히,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장애인 선거권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던 곳이었다.

<표 II-2-3> 2020년 연천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이행사항 모니터링 결과표

연천군	1. 예산			2. 홍보		
	장애인복지 전체예산 (A)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 (B)	비율(B/A*100)	온라인	오프 라인	기타
	9,217백만원	22.1백만원	0.2%	3건	2건	5건
	3. 기본계획 이행					
	기본계획상 추진사업의 수 (C)		실제 추진 사업의 수 (D)		실제 추진 정도(D/C*100)	
	73개		5개		6.8%	

3. 사업추진 3단계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행사항 모니터링

가. 사업 추진 방법

- 1차. 시·군 인터뷰(질의) 및 자료공유 요청
- 2차. 모니터링 설문지 작성 후 회신 요청
- 3차. 시·군 예산 확인 및 자료 분석

나. 모니터링 내용

경기북부 10개 시·군 中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연천군을 제외하고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총 3곳(모니터링 상으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으로 대체 수립 된 구리시 포함)으로서 이곳을 중점 관찰 시·군으로 설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하였다.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는 목표의 단계는 각 지역에 맞춘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시책을 구분지어야 하기에 동일한 기준선이 나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인권헌장<sup>3)</sup>’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sup>4)</sup>’을 기반으로 5대 영역과 19개의 분류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그

3) 장애인인권헌장 (1998)

4)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국가인권위원회, 2013)

기준안에 각 시·군의 기본계획안에 해당 되는 영역을 분류하여 그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 여부를 확인 하였다.

모니터링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3-1>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영역과 분류

영역	분류
① 평등한 참여	정책결정 참여권/참정권, 생존권, 접근권
② 기본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가족생활권/거주권, 재산권, 건강권, 이동권, 자기결정권/의사결정권, 문화향유권
③ 차별시정 및 예방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배제·학대받지 않을 권리
④ 사회적기반	여성장애인의 권리, 정신장애인의 권리, 발달장애인의 권리, 장애아동의 권리
⑤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

다. 결 과

<표 II-3-2>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모니터링 결과표

(2023년 기준)

구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연월	시행연차 (계획연한/ 현 진행연수)	연간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정도 (자체평가,%) <sup>5)</sup>	영역 및 분류 구분에 따른 기본계획의 구성 비율(%) <sup>6)</sup>	자체 수립 기본계획 대비 시행 비율(%) <sup>7)</sup>	별도 시행계획 수립여부
고양시	17  2016.11	5/5	89	84.2	40.9	부
	27  2021.11	5/2		73.7	84.0	부
남양주시	17  2019.02	5/5	93	63.2	71.4	부
구리시	47  2018.10	4/4	100	21.0	75.0	부
	57  2022.09	4/1		31.6	50.0	부
평균			94	54.7	-	-

기본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 3개의 시·군에서 모니터링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기본계획대비 시행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각 시·군의 자체평가는 94%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그 사업 중 실제 인권보장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추진사업은 54.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래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할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 기존 서비스 제공자 중심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기본계획 수립 시, 당사자의 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수렴해야 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이다.

5) 각 시·군의 기본계획상 시행연차부터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정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지수

6) 각 시·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실제 추진사업이 모니터링상 인권보장 전체 영역 및 분류에 차지하는 비율

7) 각 시·군에 수립된 전체 기본계획 대비 실제 추진 되고 있는 사업의 비율

그리고, 현재 수립 되어져 있는 기본계획 대비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비율은 각 시·군의 기본계획의 회기별 시작과 마무리 시기가 모두 다르고, 기본계획의 형태 및 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평균을 내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 되었다.

위 3곳을 중점 관찰 시·군으로 설정하고 살펴 보았다.

다. 중점 관찰 시·군 과 이행사항 정도

1) 고양시

가) 기본계획

① 1기 (2017~2021)

<표 II-3-3>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1기)<sup>8)</sup>

전략목표	전략과제	실행과제
1. 차별금지 영역별 장애인 인권보장	1.1. 장애인 생존권·거주권 보장 및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내실화 외 1개
	1.2.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실태조사 및 예방적 의료지원 강화 외 1개
	1.3.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지원	꿈의 버스 확대 및 장애인 권리 기반 교통환경 조성
	1.4. 장애인 접근권 보장 및 지원	접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무장애환경 인증제 도입
	1.5.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및 지원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종합지원대책 수립 외 1개
	1.6. 장애인 문화권·소비자권 보장 및 지원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경제적 지원 강화
	1.7. 장애인 교육·관·노동·재산권 보장 및 지원	맞춤형 교육·직업훈련 강화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외 1개
2.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보장	2.1.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인권보장	장애인 임신부 출산권 보호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외 3개
	2.2. 발달정신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및 주간보호시설 확충 외 2개
	2.3. 장애아동 권익 보호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장애아동 통합교육 실현과 교육환경 개선 외 2개
	2.4. 고령화 장애인 특화서비스로 사각지대 해소	고령화에 따른 장애인 특화서비스 지원
	2.5. 거주시설 장애인 권익보호 및 인권보장	인권예 기반한 거주시설 환경 조성 외 1개
3. 장애인 인권보장 추진 체계 및 기반강화	3.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도 정비	장애인 복지위원회 인권보장 기능 및 역할강화 외 2개
	3.2. 차별인권침해 실태 모니터링체계 구축	정기적인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외 1개
	3.3. 장애인복지 통합운영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복지 통합조직시스템 구축
	3.4. 지역별장애유형별 균형 있는 장애인복지인프라 확충	덕양구 장애인복지관 설립 및 운영 외 2개
4. 지역사회 및 시민 참여확대	4.1. 장애인 단체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인권보장체계 협력네트워크 강화
	4.2. 장애 인식 개선사업 확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홍보 활성화 외 1개
	4.3. 장애인 인권교육 내실화 및 홍보 강화	장애인 인권교육 매뉴얼 제작 및 보급
	4.4. 장애시설 종사자 교육 강화 및 처우개선	장애인 인권보장 직무교육 강화 외 2개

8) 고양시 장애인 차별실태·복지욕구 조사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제안연구 (2016.11.)

② 2기 (2022~2026)

<표 II-3-4> 제2차 고양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2기)9)

추진분야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1. 모든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한 고양	1.1. 장애인의 건강한 삶 보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 외 3개
	1.2. 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외 4개
	1.3.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외 3개
	1.4.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외 4개
2.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고양	2.1. 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외 3개
	2.2.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장애인연금 외 3개
3. 모든 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고양	3.1.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고양시 공무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외 3개
	3.2.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외 2개
	3.3.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외 2개
	3.4. 장애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청각장애인 수술비 및 재활지원 외 6개
4. 모든 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고양	4.1.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외 2개
	4.2.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외 1개
	4.3.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여가 기회 보장	장애인 특성화 행사 지원(11종)
	4.4. 고령 장애인 지원	고령장애인 돌봄센터 운영 지원

고양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4대 전략목표, 20개 전략과제, 40개 실행과제 및 88개 세부추진과제로 2016년 11월에 수립된 1기가 5년간의 사업을 2021년에 마무리 되면서 새로운 기본계획의 평가척도가 되는 기반이 되어주었고, 이에 4대 추진분야, 14개 중점과제, 50개 세부사업(신규5, 확대강화25, 유지20)으로 2021년 11월에 2기가 수립되었다.

나) 예산

① 재정 확보 근거

- 「고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항」
- 「고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6호」
- 「고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

② 재정 확보 현황

<표 II-3-5> 고양시 장애인 복지 예산 현황 비교표

(단위:백만원)

구분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A)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B)	비율(B/A*100)
고양시 2차모니터링/2020년	98,244	1,806	1.8%
고양시 3차모니터링/2023년	139,180	128,310	92.2%

9) 고양시 장애인 차별실태 조사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2021.11.)

예산과 같은 경우, 2020년에 진행된 2차 모니터링 당시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이 전체 장애인복지예산에 1.8%의 낮은 비율로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이번 3차 모니터링에는 92.2%의 상당히 높은 비율로 달라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고양시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기존 서비스 제공자 중심에서 장애당사자의 권리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1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약 4년 여 기간 동안은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점과 기본계획의 규모(총 88개의 추진사업) 보다 확보된 예산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인데, 지금의 변화는 고양시 자체에 매우 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었다.

다) 홍보

① 이행 근거

- 「고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0조」

② 홍보 현황

<표 II-3-6> 고양시 홍보 현황 비교표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기타	
	영상홍보	홈페이지 홍보	인쇄 홍보물	물품 홍보물	캠페인 및 홍보행사	언론보도	그외
고양시 2차모니터링 (2018~2020년기준)	-	-	-	-	3	-	38
고양시 3차모니터링 (2021~현재)	1	6	12	25	19	84	0

고양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활동도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존의 홍보방식이 캠페인 성의 홍보행사와 장애인식개선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면, 각종 매체물등을 폭넓게 활용하며 홍보활동에 상당히 많은 집중을 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장애인식개선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 매체에 배포하는 것과 TV를 활용하여 캠페인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를 실시하는 등의 형태로 사업 진행의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7살이 장애인을 만나면? 조회수 374회 · 1일 전</p> <p>22 좋아요 공유 만들기 오프라인 저장</p> <p>고양시·고양TV 구독자 1.74만명</p>	 <p>보조견도 배려 필요</p> <p>경기 고양시 '장애인 보조견 바로알기' 캠페인 실시</p>
<p>장애인식개선 영상 제작 홍보</p>	<p>'장애인 보조견 바로알기 캠페인' 언론보도(KBS뉴스)</p>

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에 관한 설문 결과

① 2차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시행)

<표 II-3-7> 2020년 고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이행사항 모니터링 결과표

기본계획상 추진사업의 수 (A)	실제 추진 사업의 수 (B)	실제 추진정도 (B/A *100,%)
88개	6개 (기본계획 외 2개사업 제외)	6.8

2차 모니터링 당시, 고양시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에 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총 88개의 추진 사업 중 기본계획에 해당 되지 않은 사업 2가지를 제외하고 총 사업 대비 6.8%인 6개의 사업만 이 추진되었거나 시행을 완료한 상황이었으며, 나머지 82개의 사업은 시행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장 낮은 이행률을 나타냈었다.

② 3차 모니터링 결과 (2023년 시행)

<표 II-3-8> 2023년 고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이행사항 모니터링 결과표

기본계획상 추진사업의 수 (A)		실제 추진 사업의 수 (B)		실제 추진정도 (B/A *100,%)	
1기 기본계획 (2021)	88개	36개	(기본계획 외 6개사업 제외)	40.9	
2기 기본계획 (2022~현재)	50개	42개		84.0	
구분	인권보장 영역	분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사업 목록	관련 내용 기술 요약	자체판단 이행정도(%)
고양시	① 평등한 참여	정책결정 참여권/참정권	(1기 사업)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복지증진 제도개선 심의	90
			(3.3.3./신규) 공공시설 편의시설 확충	공공기관(사전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모니터링 실시 및 사후조치 점검	
		생존권	(1.4.1./연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6개소 운영	90
			(1.4.3./확대강화)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10채 운영	
			(1.4.4./확대강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장애인자립생활 주택 4채 운영	
			(1기 사업)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자립생활지원방안 연구 용역 추진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과 관련한 정책 마련 도모	
			(1.4.5./확대강화)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	
(1.3.2./확대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추진	시추가 활동지원 급여 지원 (23년 797명)				
(3.2.1./연결)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중증장애인 집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② 기본권 보장	접근권	(4.1.1./연결)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수급가구 복지관련 신문 무료보급	90
		(4.1.2./연결) 고양시 장애인 복지정보 가이드 북 시리즈 제작	장애인 복지정보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4.1.3./연결) 수어통역센터 운영	수어통역센터 1개소 운영	
		(3.3.1./연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1개소 운영	
		(3.3.2./확대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요원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현장 조사요원을 통한 DB구축	
		(4.4.1./신규)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	고령장애인전용쉼터 운영	
	인간다운 생활권	(2.2.2./확대강화) 장애수당 지급	만 18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급	90
		(2.2.1./확대강화) 장애인연금 지급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하 장애인 지급	
		(기본계획 외)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급	저소득 장애인 월동난방비 외 냉방비 추가 지원	
	노동권	(2.1.1./연결) 장애인 일자리 지원	2023년 기준 일반형일자리 72명, 시간제일자리 42명, 복지일자리 117명, 직무지도원 파견 7명	95
		(2.1.2./확대강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동료지원활동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3.4.6./연결)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자 운영	2023년 기준 3명	
	교육권	(3.4.1./확대강화)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2023년 기준 1명	90
		(1.1.2./연결)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조기기 교부 등	
		(1.1.1./연결)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입원비(의료비) 지원	
(3.4.2./확대강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바우처 지원		
(3.4.3./확대강화)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3.4.4./확대강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우리아이심리지원, 시간장애인안마, 장애인맞춤형 운동, 장애인보조기기렌탈		
(17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		훈련수당, 교통수당, 급식수당 지원		
(2.2.4./확대강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 지원		
(17 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관 1개소 운영		
(17 사업) 발달장애인 교육지원사업		교육 진행 및 발달지연클리닉 검사비 지원, 발달장애청소년 성교육 진행		

	가족생활권/ 거주권	(1기 사업)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무주택세대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알선	90
	재산권	(기본계획 외) 법률 상담사업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소송 이전의 1차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90
	건강권	(1기 사업)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관련 기관 2개소 운영	90
		(3.4.7./연결)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	구강교육, 건강검진, 홈스트레칭 등의 건강관리 지원	
		(1.1.1./연결) 장애인 의료비 지원(중복)	장애인 의료비 지원	
		(1.1.2./연결)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중 복)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조기기 교부 등	
		(1기 사업)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수리비 지원	급속충전기 설치 및 수리비 지원(총 21대)	
		(1기 사업)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이동권	(3.4.5./연결)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 입 지원	뇌병변 장애인 100대상	70
		(4.2.1./연결)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특별교통수단, 임차택시 운영	
	자기결정권/ 의사결정권	(기본계획 외) 고양시 교통약자 택시 할인	교통약자 택시 할인 체크카드/택시비 70%지원	90
		(1기사업) 발달장애청소년 성교육	발달장애청소년 성교육 진행	
	문화향유권	(1기사업)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지원	95
		(4.2.2./연결)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 지원	꿈의버스 3대 운영	
		(1.1.3./연결) 장애인체육관 운영	장애인체육관 1개소, 재활스포츠센터 1개소 운영	
(4.3.1./연결) 장애인 특성화 행사 지원(11종)		장애인의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등 추진		
(1.2.5./확대강화) 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휴식지원프로그램, 장애인가족의 낮활동 지원, 장애가족 돌봄 서비스 시행		
(3.1.2./연결) 장애인인식개선사업	희망가득 공연상자, 장애인 작품전시회 등 실시			

③ 차별시정 및 예방	차별받지 않을 권리	(3.3.1./연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중복)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1개소 운영	90	
		(3.3.2./확대강화)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요원 운영(중복)	장애인편의시설 현장 조사요원을 통한 DB구축		
	배제·학대받 지 않을 권리	(3.1.1./연결) 고양시 공무원 장애인식개선 교 육 실시	매년 공무원등 직원대상으로 교육 실시	90	
		(3.1.3./연결)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지원	이용인 및 종사자 성인권 교육 실시		
		(17기 사업)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부모교육과 인권교육 지원		
		(3.1.2./연결) 장애인식개선 사업 (중복)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실시		
		(3.1.4./연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증진 강화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④ 사회적 기반	여성장애 인의 권리	(1.2.3./연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90
			(1.2.4./연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정신장애 인의 권리	(기본계획 외)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관 리	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 운영	90
발달장애 인의 권리		(1.2.1./확대강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정서 상담서비스 제공	90	
		(1.3.3./확대강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만18세이상 만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낮시간 활동지원		
		(1.3.4./확대강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 비스 지원	만6세이상 만18세미만의 발달장애인 대상 그룹형 활동서비스 지원		
		(3.2.2./연결) 고양 안심 스마트 밴드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 (2023년 50개)		
		(17기 사업)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 업	주간보호시설 및 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긍정적 행동지원 교육 및 소진예방 교육 실시		
		(17기 사업) 발달장애인 보완대체의사소통 (AAC) 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AAC)책 제작, 보급 및 배치, 이해교육 실시		
		(3.4.7./연결)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중 복)	건강검진 및 생활건강 교육 실시		
	(기본계획 외) 공공후견 지원사업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			
(17기 사업) 발달장애인 교육지원사업(중복)	발달장애조기발견 교육, 발달장애 청소년 성교육				

	장애아동의 권리	(3.4.2./확대강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중복)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바우처 지원	90
		(3.4.3./확대강화)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지원(중복)	언어발달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3.4.4./확대강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중복)	우리아이심리지원, 시간장애인안마, 장애인맞춤형 운동, 장애인보조기기렌탈	
⑤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기본계획 외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고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0	
※ 이 외 영역에는 해당사항(추진사항)이 없음				

3차 모니터링의 결과 고양시는 기본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6개 사업을 제외하면, 1기 사업에 해당하는 총 88개 사업에서는 40.9%인 36개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2021년에 기본계획을 마무리 되었고, 2기 사업에선 50개의 총 사업 중 84.0%인 42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선 ‘예산의 확보 비율’,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던 고양시의 변화가 사업으로 연결되면서, 2차 모니터링때는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이던 곳이 이번 조사에서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가장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곳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이게 된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고양시의 장애인등록인구수는 42,689명<sup>10)</sup>으로서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2기 기본계획을 수립 할 당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배포한 설문지가 1,000부 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중 364부(36.4%)만 회수되어 표본이 되었다. 또한, 표본 364부 중에 장애인이 아닌 부모 및 기관 종사자들이 대리응답한 경우가 190부(52.2%)였고, 정작 장애인이 직접 응답한 경우는 174부(47.8%)로 표본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를 보였다.

이는 고양시 등록장애인의 0.4% 정도의 수치로서 실질적으로 많은 장애인의 목소리가 담긴 결과의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조사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2) 남양주시

### 가) 기본계획

<표 II-3-9> 남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11)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1. 장애인 기본권 보장 및 자립생활 기반구축	1.1.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확충 및 개선 외 3개
	1.2. 장애인 여가생활 지원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 외 3개
	1.3.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인프라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교육 확대 외 6개
2. 장애인 차별인식 개선 및 인권교육 확대	2.1. 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표개발 추진	남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지속
	2.2. 장애인 차별인식 개선 및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시설장애인단체 종사자 인권교육 내실화 외 4개
3.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3.1. 지역사회 장애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인권·복지 실무자 정책참여 및 네트워크 활동 강화 외 1개
	3.2. 장애인 권익증진 기능 강화	장애인 권익증진 전담 기구 설치 및 운영
4. 장애인가족 지원 활성화	4.1.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기반구축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4.2. 장애인 가족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외 2개

10) 고양시 등록장애인현황 (경기도청, 2022년 12월 기준)

11) 남양주시 장애인 차별실태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9.02.)

남양주시의 기본계획은 4대 정책목표, 9개 정책과제, 28개의 세부추진과제로 2019년 2월에 수립되었으며, 기본권 등의 장애인 생활실태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그에 따른 기본권 보장과 인프라 구축 외 네트워크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강화하여 수립하였다. 또한, 남양주시는 2023년이 1기 기본계획의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위 정책과제를 평가하여 현재, 2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있다.

나) 예산

① 재정 확보 근거

-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5호」

② 재정 확보 현황

<표 II-3-10>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 예산 현황 비교표

(단위:백만원)

구분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A)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B)	비율(B/A*100)
남양주시	2차모니터링/2020년	62,196	40,512	65.1%
	3차모니터링/2023년	93,290	51,555	55.3%

남양주시의 예산과 같은 경우는 2차 모니터링 당시에는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에 65.1%의 높은 비율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추진예산으로 잡았었으나, 3차 모니터링 시에는 55.3%의 비율로 9.8%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9년부터 시작 된 기본계획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의 시점으로서 일부 사업이 종료(마감) 된 부분이 있었으며, 예산액은 오히려 증가되었던 부분을 참고 할 수 있다.

다) 홍보

① 이행 근거

-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9조」

② 홍보 현황

<표 II-3-11> 남양주시 홍보 현황 비교표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기타		
	영상홍보	홈페이지 홍보	인쇄 홍보물	물품 홍보물	캠페인 및 홍보행사	언론보도	그외	
남양주시	2차모니터링 (2019~2020년기준)	-	-	2	-	-	-	-
	3차모니터링 (2021~현재)	-	-	3	-	-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현황은 2차에 이어 3차 모니터링 결과 시점까지 매년 1회 정도의 인쇄 홍보물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홍보는 인식개선의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활동까지 연결되지는 못한 것이었으며, 비중있는 사업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큼 홍보의 비중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에 관한 설문 결과

① 2차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시행)

<표 II-3-11> 2020년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이행사항 모니터링 결과표

기본계획상 추진사업의 수 (A)	실제 추진 사업의 수 (B)	실제 추진정도 (B/A*100,%)
28개	23개	82.1

2차 모니터링시, 남양주시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에 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총 28개의 추진 사업 중 총 사업 대비 82.1%의 높은 비율로 23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위원회를 운영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② 3차 모니터링 결과 (2023년 시행)

<표 II-3-12> 2023년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이행사항 모니터링 결과표

기본계획상 추진사업의 수 (A)			실제 추진 사업의 수 (B)		실제 추진정도 (B/A*100,%)
28개			20개		71.4
구분	인권보장 영역	분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사업 목록	관련 내용 기술 요약	자체판단 이행정도(%)
남양주시	① 평등한 참여	생존권	(1.3.1) 장애인 자립생활교육 확대  (1.3.5)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4.2.2) 생애주기별 장애인 돌봄체계마련	장애인지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체험홈운영(3개소)을 통한 자립생활 교육 확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휠체어무료대여서비스 신설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발달재활언어발달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 학원교육비 지원 장애인의료비,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	80

	접근권	(1.1.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추진 (BF추진)	관내 공공기관 BF인증 (21년 11개, 22년 7개)	90
		(1.3.7.) 농아인 쉼터 설치 및 운영	남양주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② 기본권 보장	노동권	(1.3.2.) 장애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여건 및 기반 조성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 개발 및 확대 추진	90
		교육권	(1.2.1.)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확대	
	(1.3.6) 북부장래인복지관 추가건립 및운영		북부장래인복지관 개관	
	가족생활권/거주권	(4.2.1.)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인복지관 2개소에 가족지원사업 신규 업무위탁	100
		이동권	(1.1.1.)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확충 및 개선	
	(1.1.2.) 장애인주차장 관리 강화		주차구역 계도 일자리 운영	
	(1.1.4.)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확대		장애인이동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및 개별 수리비용 지원	
	문화향유권	(1.2.2.) 권역별 생활체육활동 지원 강화	장애인 비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지원	100
			장애인체육단체 지원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 장애인생활체육 종목 공모사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배치지원	
	③ 차별시정 및 예방	차별받지 않을 권리	(2.1.1.) 남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속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차년도 기본계획 연구용역 준비(2024-2028)
(3.1.2.)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배제·학대받지 않을 권리	(2.2.2.) 장애인시설·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한 인권증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요원 대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 실시, 시설별 노사협의회 구성 및 분기별 실시, 고충처리간담회 간담회 실시	100
		(2.2.3.) 장애특성에 따른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상시화		
④ 사회적 기반	여성장애인의 권리	(4.2.2.) 생애주기별 장애인 돌봄 체계 마련 (중복)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50
	발달장애인의 권리	(1.3.3.) 발달장애인 카페점 설치 확대 및 지원기반 마련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뜨란 운영	100
		(1.3.4.) 발달장애인 특화형 체험홈	발달장애인 특화형 체험홈 운영(2개소)	
	장애아동의 권리	(4.2.1.)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중복)	장애인복지관 2개소에 가족지원사업 신규 업무위탁	100
(4.2.2.) 생애주기별 장애인 돌봄 체계 마련 (중복)		발달장애아동 긴급돌봄사업 신규 운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추가지정		

※ 이 외 영역에는 해당사항(추진사항)이 없음

3차 모니터링의 결과 남양주시는 총 28개의 사업 중 20개의 사업을 진행하며 71.4%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생애주기별 장애인 돌봄체계 마련과 같은 사업을 강화하고, 이전에 시행되지 못하였던 장애인 인권·복지 실무자 정책 참여 및 네트워크 활동 같은 사업을 시행하며 1기 기본계획을 마무리 하였다.

남양주시와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기본계획 상 정신장애인의 사회적기반 사업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았거나,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영역의 건강권 및 생활권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다. 이에 현재, 준비 중인 2기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 조금 더 세밀하게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3) 구리시

가) 기본계획

① 4기 (2019~2022)

<표 II-3-13>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4기)<sup>12)</sup>

추진전략	세부사업
1. 서비스 접근성 강화	이동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외 6개
2. 커뮤니티 케어기반 구축강화	장애아동 돌봄확충, 장애인 정서 및 발달재활지원, 발달장애인 평생 학습센터 건립 외 3개
3.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외 3개
4.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대	학교사회복지실 확대 운영 및 역량강화 외 3개
5. 사회투자를 통한 인적자본 개발	두자녀가정 지원강화 외 6개

② 5기 (2023~2026)

<표 II-3-14>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5기)<sup>13)</sup>

추진전략	세부사업
1. 대상맞춤 촘촘한 돌봄제공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활성화 외 5개
2.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조성	장애인 주거이동권 보장사업 외 5개
3. 생애주기별 경제적 안정기반 조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외 4개
4. 시민이 행복한 삶의 질 보장	교통편의성 증대사업 외 5개
5.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구축	위기가구 긴급지원 외 3개
6.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재난 및 사회안전체계 구축 외 3개
7.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운영 외 3개
8.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지원	돌봄체계 네트워크 구축 외 3개

12) 제4기(2019-2022) 구리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8.10)

13) 제5기(2023-2026) 구리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2.09)

구리시는 「구리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 아닌 ‘구리시지역사회보장계획’ 으로 대체 수립 되었으며, 2018년에 5대 추진전략, 27개의 세부사업으로 4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4년간의 주기로 2022년에 마무리 되었으며, 같은해에 8대 추진전략, 39개 세부사업으로 5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23년 첫 시행의 해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이 중에 장애인 관련 사업계획은 4기는 장애아동 돌봄 확충, 장애인 정서 및 발달재활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등 4개의 사업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5기에서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활성화, 장애인 주거이동권 보장사업,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등 6개의 사업만 포함되어 있기에 이 사업만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다만, 2차 모니터링 당시에는 응답을 하지 않아서 진행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모니터링에는 관련 응답을 하여,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나) 예산

① 재정 확보 근거

- 「구리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구리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6호」
- 「구리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

② 재정 확보 현황

<표 II-3-15> 2023년 구리시 장애인 복지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A)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B)	비율(B/A*100)
구리시	3차모니터링/2023년	30,191	2,007	6.6%

우선, 구리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 수립됨에 따라 기본계획 내 사업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것을 감안하는 것 보다 조례상에서 이야기 하는 ‘재정적 지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미를 두어 분석의 방향성을 타 시·군과 동일한 선에서 분석을 하였다. 장애인복지 전체예산 대비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은 6.6%로 직전년도 기본계획 예산(32백만원)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모습이지만, 이것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이 ‘복지’와 관련한 예산과 대비하여 보았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만이 확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 홍보

① 이행 근거

- 「구리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0조」

② 홍보 현황

<표 II-3-16> 2023년 구리시 홍보 현황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기타	
	영상홍보	홈페이지 홍보	인쇄 홍보물	물품 홍보물	캠페인 및 홍보행사	언론보도	그외
구리시	3차모니터링 (2021~현재)	-	-	-	1	3	-

구리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현황은 언론보도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는 형식의 홍보활동이 진행 되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남양주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차원에서 충분히 활용 될 수 있는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 아쉬웠으나, 이에 반대로 실질적인 기본계획 상 사업의 수를 대비로 보았을 때의 홍보활동은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이해 할 수는 있다.

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에 관한 설문 결과

<표 II-3-17> 2023년 구리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이행사항 모니터링 결과표

기본계획상 추진사업의 수 (A)		실제 추진 사업의 수 (B)		실제 추진정도 (B/A*100%)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	전체 27개 사업 중 4개	3개	(기본계획 외 30개 사업 제외)	75.0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현재)	전체 39개 사업 중 6개	3개		50.0	
구분	인권보장 영역	분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사업 목록	관련 내용 기술 요약	자체판단 이행정도(%)
구리시	① 평등한 참여	정책결정 참여권 / 참정권	(기본계획 외) 구리시 시장자문위원회	구리시 시장자문위원회 위원활동	100
			(기본계획 외) 장애인 투표 권리보장	장애인 투표 권리 안내, 투표소 이동보조	
		생존권	(기본계획 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사회복지서비스 이의신청 창구운영 및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100
			(기본계획 외) 구리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 운영	
			(기본계획 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2개소 운영	
			(기본계획 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서비스 380명 지원	
		접근권	(기본계획 외) 장애인정보화 협회 운영	시청각장애인 정보화 교육 실시	100
(기본계획 외) 수어통역센터 운영	1개소 운영				

② 기본권 보장		(1-2-2(신규) 장애인 주거이동권 보장사업	무장애도시 조성, 편의시설 우수 인증마크 제작, 장애인 주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점검단 활동지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17개소 운영, 실태조사 105개소 실시	
	인간다운 생활권	(기본계획 외) 사회복지급여 지원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00
		(1-2-2(신규) 장애인 주거이동권 보장사업(중복)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노동권	(기본계획 외)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직무지도원 등 91명 근로	100
		(1-3-1(신규)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공공근로사업 선발시 장애인 기산점 반영	
	교육권	(1-1-5(연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활성화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경기도최초) / 298명	100
	가족생활권/ 거주권	(1-2-2(신규) 장애인 주거이동권 보장사업(중복)	장애인주거환경개선, 주택개조사업	100
	재산권	(기본계획 외)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 운영	1개소 운영	100
	건강권	(기본계획 외) 사회복지급여 지원(중복)	장애인 의료비 지원	100
		(기본계획 외)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추진	
	이동권	(4기 사업) 이동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저상버스 확대 :30대 운영 대중교통시설 편의제공(정류장 음성안내) 특별교통수단 확대 (희망콜 22대, 이동지원센터 차량 5대, 무료 콜승합 1대 운영)	100
	자기결정권/ 의사결정권	(기본계획 외) 장애인시설, 단체 성인지 교육	자기결정권 교육	100
		(기본계획 외) 구리기정성통합상담지원센터 지원	구리기정성통합상담지원센터 지원 연계	
	문화향유권	(기본계획 외)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문화활동 참여 확대	100
		(기본계획 외) 장애인 합창단 운영	예술 참여 지원	
		(기본계획 외)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단체 체육 시설 지원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파크골프 활성화 지원, 장애인단체 체육시설 지원	

③ 차별시정 및 예방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계획 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 한 조례 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100
	배제·학대받 지 않을 권리	(기본계획 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장애인권교육	장애인권교육 실시	100
		(기본계획 외) 시민대상 장애인권교육		
(기본계획 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장애인권교육				
④ 사회적 기반	여성장애인의 권리	(기본계획 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및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장려금 지원	100
		(기본계획 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장려금 지원		
		(기본계획 외) 장애인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월 1회 교육	
	정신장애인의 권리	(기본계획 외)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개소 운영	100
		(기본계획 외)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정신장애인 직업재활(바리스타) 교육지원	
	발달장애인의 권리	(1-1-5/연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활성화(중 북)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경기도최초) / 298명	100
		(4기 사업) 장애인 정서 및 발달재활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14개소 운영(350명)	
		(기본계획 외) 지적발달장애인 단체 지원	단체 운영 지원	
	장애아동의 권리	(기본계획 외) 장애 영유아 보육지원	장애 영유아 보육지원 54명, 어린이집 장애특수반 운영 17개반	100
		(기본계획 외) 장애이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1개소 운영(300명)	
(기본계획 외) 청소년병과후 활동서비스 운영		4개소 운영(60명)		
(4기 사업) 장애인 정서 및 발달재활지원(중북)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14개소 운영(350명)		
※ 이 외 영역에는 해당사항(추진사항)이 없음				

구리시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에 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4기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사업 중 장애인 관련 사업 4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75.0%인 3개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5기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사업 중 장애인 관련 사업 6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50.0%인 3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경기도 최초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외에 많은 복지 관련 사업들을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구성 되어져야 할 정책이 뚜렷한 계획 없이 서비스 제공자 중심에서 계획된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모든 내용의 통합적인 사업으로 구성 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에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계획으로 대체 수립한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 권리가 축소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 관련 계획은 3~4개 정도, 많게는 7개 정도의 사업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활동지원제도, 발달재활서비스 등 국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서비스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고, 특이한 경우는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등이 수립되는 경우가 있다.

문제점은 이러한 사업계획들이 과연 해당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여 이야기 하고자 하는 ‘장애인 권리보장의 내용들을 모두 포함 할 수 있느냐’ 일 것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인 만큼 대체수립이 아닌 장애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4. 사업추진 4단계 : 모니터링 결과표

<표 II-4-1> 경기북부 10개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모니터링 결과표

구 분	조례 제정 실태 [1단계]			기본계획 수립 [2단계]			이행정도(%) [3단계]	
	2019년	2020년	2023년	2109년	2020년	2023년	2020년	2023년
고양	제정 (2015.10.08.)	좌동	개정 (2021.11.09.)	수립 (2016.11.)	좌동	수립 (2021.11.)	6.8	1기 40.9 2기 84.0
남양주	개정 (2019.04.11.)	좌동	좌동	수립 (2019.02.)	좌동	좌동	82.1	71.4
구리	제정 (2015.04.20.)	좌동	좌동	대체수립 (2018.10.)	좌동	대체수립 (2022.09.)	응답없음	4기 75.0 5기 50.0
연천	제정 (2016.07.08.)	좌동	좌동	수립 (2018.01.)	좌동	2기 미수립	6.8	해당사항 없음
가평	개정 (2018.04.11.)	좌동	좌동	미수립	미수립	미수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동두천	제정 (2013.11.18.)	좌동	좌동	미수립	미수립	미수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파주	제정 (2013.05.14.)	개정 (2019.12.27.)	좌동	미수립	미수립	미수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포천	제정 (2014.12.29.)	좌동	좌동	미수립	미수립	미수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의정부	미제정	제정 (2020.09.22.)	좌동	미수립	미수립	미수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양주	미제정	미제정	미제정	미수립	미수립	미수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계	8곳 (80%)	9곳 (90%)	9곳 (90%)	3곳 (30%)	3곳 (30%)	2곳 (20%)	-	-

대체수립 구리시 제외

2020년에 진행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2차 모니터링 이후, 큰 변화를 보인 곳은 1단계(조례제정) 과정에서는 조례상 차별적 요소가 있는 표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 부용어와 표현을 어문 규범에 맞게 고치는 개정을 실시한 고양시가 유일하였으며, 2단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고양시가 1기를 마치고 2기 수립을 완료한 반면, 연천군은 1기를 마치고 2기 수립을 진행하지 못한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3단계(이행정도모니터링)과정의 결과는 대체수립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된 구리시를 제외하고 2곳, 고양시와 남양주시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사업의 표적대상인 10개의 시·군 데이터 중 30%인 3곳의 내용을 평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전반적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으며, 각 시·군의 조례제정과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촉구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사업을 종결하게 되었다.

### III. 마무리

#### 1. 모니터링의 문제점 및 한계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정책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그 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질의를 통한 인터뷰 시에도 시·군에서 아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모르거나, 조례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곳도 발생하여,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 2. 과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이 과정은 기존 시혜와 복지의 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인권의 문제로 전환하고, 그 토대로 장애인 인권의 측면에서 정책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실시되었다.

이는 2006년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여성,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 접근성 보장, 교육권과 일할 권리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담아 구성하여,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한 것처럼, 기본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장애인으로서 차별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그 발판을 법제화하는 과정임이 분명하며, 이동권, 교육권, 접근권, 노동권, 건강권, 참정권,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등 그 삶의 질을 보장받고, 향상할 수 있는 기본 토대와 같은 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약속은 3곳만 진행된 것으로 아직 이행되지 못한 곳이 현저히 더 많은 상태이고, 이는 시·군의 의식부족, 재정확보의 부담, 기획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024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곳들을 비롯하여, 2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곳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답변한 곳이 많아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모니터링의 결과를 통해 이행이 부족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정책 현주소를 알게 되었듯, 기본계획 수립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과제로 남을 것 같다. 그리고 모든 계획은 세워진 후 그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만 한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삶의 현장을 함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그 책무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개선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와 사회,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보고자료 2

# 2023년 상담 현황 보고서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 I. 2023년 상담분석 개요

### 1. 법적근거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치 등)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피해자지원, 사후관리 등 장애인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 및 그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 2. 목 적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상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 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3. 기 간

2023.01.01. ~ 2023.09.30.

### 4. 대 상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상담

## 5. 세부분석

### [신고접수]

(단위: 건, %)

학대의심		차별		일반상담		계	
248	67.8	30	8.2	88	24	366	100

2023년 9월말 기준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접수는 총 366건으로 장애인학대의심사례가 248건으로 67.8%, 일반상담이 88건으로 24%를 차지하였으며 차별과 관련된 상담이 30건으로 8.2%를 차지하였다.

2022년 9월말 기준 309건 접수된 사례와 비교하면 2023년 9월말 기준 접수 사례는 366건으로 작년 대비 18.4%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대의심사례는 2022년 9월말 기준 183건, 2023년 9월말 기준 248건으로 작년 대비 35.5% 증가, 일반상담은 2022년 9월말 기준 99건, 2023년 9월말 기준 88건으로 작년 대비 11.1% 감소하였고 차별 상담은 2022년 9월말 기준 27건, 2023년 9월말 기준 30건으로 작년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신고접수]

(단위: 건, %)

구분	건	계
연천	7	1.9
동두천	25	6.8
양주	62	16.9
포천	15	4.1
의정부	57	15.6
남양주	29	7.9
파주	69	18.9
고양	48	13.1
구리	17	4.6
가평	10	2.7
기타	27	7.5
<b>계</b>	<b>366</b>	<b>100</b>

2023년 9월말 기준 상담 접수된 지역을 살펴보면 파주 69건, 양주 62건, 의정부 57건 순으로 상담이 많이 접수되었다. 기타의 경우 일반상담으로 당사자가 지역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거나 그 외 지역에 해당된다.

[성 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파악안됨		계	
180	49.2	181	49.4	5	1.4	366	100

2023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9월말 접수된 상담 366건 중 남성은 49.2%(180명), 여성은 49.4%(181명)으로 나타났다. 파악안됨의 경우 일반 상담으로 단순 정보제공이나, 당사자가 불특정 다수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연 령 대]

(단위: 명,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기타	계
49	104	41	49	49	37	5	3	29	366
13.4	28.4	11.2	13.4	13.4	10.1	1.4	0.8	7.9	100

상담 접수 연령대는 20대가 28.4%(10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대, 40대, 50대가 동일하게 13.4%(49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32	8.7
뇌병변장애	28	7.7
시각장애	17	4.6
청각장애	9	2.5
언어장애	1	0.3
지적장애	199	54.4
자폐성장애	26	7.1
정신장애	21	5.7
신장장애	3	0.8
심장장애	0	0
호흡기장애	0	0
간장애	0	0
안면장애	0	0
장루·요루장애	0	0
뇌전증장애	3	0.8
미등록	27	7.4
<b>계</b>	<b>366</b>	<b>100</b>

※중복 장애 미포함

장애 유형별 상담 접수는 지적장애가 54.4%(199건)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8.7%(32건), 뇌병변 7.7%(28건), 미등록 7.4%(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의 수는 매년 상담 접수되는 장애유형 중 압도적으로 높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에 대한 인지 능력과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가해자를 오히려 돌봐주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 수사기관 또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피해자가 미등록 장애인인 경우에도 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학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 [신고접수 방법]

(단위: 건, %)

전화	온라인	문자	팩스	우편	내방	기타 (인지포함)	계
216	53	3	7	2	12	73	366
59	14.5	0.8	1.9	0.5	3.3	20	100

신고는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고, 장애인학대 정보시스템 문자신고, 팩스·우편을 통한 신고, 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내방신고 및 상담원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인지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다.

접수 방법은 전화 신고가 59%(2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접수 20%(73건) 다음으로 온라인 14.5%(53건), 내방 3.3%(12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말 기준 309건과 비교하였을 때, 기타 접수가 11.3%(35건)에서 20%(73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원이 학대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하여 신고 접수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 [신고접수 경로]

(단위: 건, %)

신고	인지	연계	이관	경찰통보	계
249	65	4	2	46	366
68	17.8	1.1	0.5	12.6	100

접수 경로는 신고가 68%(249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외 인지가 17.8%(65건)을 차지하였으며 경찰통보를 통한 신고 접수가 12.6%(46건)을 차지하였다.

경찰통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현장 조사 및 실시율 현황]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학대 조사	학대 조사 실시율	학대 조사 횟수	사례별 조사 횟수
248	247	99.6	395	1.6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을 담당하는 권리옹호팀은 7명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학대 조사는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대의심사례 248건 중 247건의 학대 조사를 실시하여 99.6%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전체 학대 조사 횟수는 395건으로 사례별 1.6건의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조사는 피해자, 행위자, 관련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상담조사 방법으로는 방문, 내방, 전화, 기타로 진행되며 상담 조사 시 조사 대상자의 연락 불가, 의사소통 불가, 사망, 수감, 조사거부, 경찰 수사 중, 타 기관 조사 중, 부재중으로 조사가 불가되는 경우도 있다.

학대의심사례 조사 시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응급조치는 피해장애인 쉼터 등으로 연계하거나 의료기관 인도를 통해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 [학대신고 사례판정]

(단위: 건, %)

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조사 중		계	
125	50.4	95	38.3	9	3.6	19	7.7	248	100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례판정 절차를 통해 판단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회의에서 장애인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로 판정하며, 사례회의에서 사례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학대 판정위원회를 거쳐 학대여부를 판정한다.

장애인학대사례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한다. 잠재위험사례는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비학대사례이지만 향후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비학대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로 구분한다.

2023년 9월말 학대의심신고 248건중 125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되었으며 비학대사례가 95건, 잠재위험사례가 9건, 조사 진행 중인 사례가 19건으로 나타났다.

## [사례판정 학대유형]

(단위: 건(명), %)

학대유형	상담건(명)	비율(%)
신체적학대	31	19.9
정서적학대	25	16
성적학대	15	9.6
경제적착취 (노동력착취 포함)	77	49.4
유기	0	0
방임	8	5.1
<b>계</b>	<b>156</b>	<b>100</b>

※ 중복학대 포함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중 경제적착취(노동력착취 포함)가 49.4%(7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학대 19.9%(31건), 정서적학대 16%(25건), 성적학대 9.6%(15건), 방임 5.1%(8건) 순으로 판정이 되었다.

2022년 9월말 기준 학대로 판정된 108건에 대해서 정서적학대가 34.3%(3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착취(노동력착취 포함) 25%(27건), 방임 19.4%(21건), 신체적학대 14.8%(16건), 성적학대 6.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할 때 경제적착취(노동력착취)의 사례가 34.3%(37건)에서 49.4%(77건)으로 높은 폭으로 증가할 것을 알 수 있다.

### [피해자지원유형]

(단위: 건,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예방 교육	상담	중재	진정	학업	기타	계
23	0	99	224	127	1	1,334	3	2	6	51	1,870
1.2	0	5.3	12	6.8	0.1	71.3	0.2	0.1	0.3	2.7	100

2023년 9월 말 접수 기준 상담 및 지원은 총 1,870회의 피해자지원이 진행되었다.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기타 등의 영역으로 나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한 사례에 여러 가지의 피해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총 1,870건의 지원 건수 중 상담을 제외하고 사법지원이 12%(22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지원 6.8%(127건), 거주지원 5.3%(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지원**은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 등의 치료와 피해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통원치료나 검진 등을 말한다. **심리지원**은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진단,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지원**은 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지원으로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신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법지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및 사법절차, 법률상담이 해당된다. **복지지원**은 장애인등록,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제도,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자원 연계를 말한다. 그 외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 간 중재, 교육연계, 진정, 행정처분 요구, 피해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이뤄지는 상담 등을 말한다.

## [일반사례 신고접수]

(단위: 건, %)

차별											일반			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교통 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사법/행정	참정권	기타	정보문의	불만/민원	기타	계
4	2	6	0	1	1	1	0	11	0	4	64	8	16	118
3.4	1.7	5	0	0.8	0.8	0.8	0	9.3	0	3.4	54.2	6.8	13.8	100

일반상담 및 차별상담의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사례는 정보문의 사례가 54.2%(6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차별에서는 사법/행정 사례가 9.3%(11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차별 상담 같은 경우 본 기관에서 상담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진정 접수 등을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